2025-건설안전실-259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S 목차

PART 01 | 사업추진방법 1

Ⅰ. 안내서 활용방안 ····· 3
Ⅱ. 단계별 추진 절차(위탁) ····· 5

PART 02 | 회차별 보고서 양식 13

Ⅰ. 1회차 보고서 양식 ····· 16
Ⅱ. 2회차 보고서 양식 ····· 22
Ⅲ. 3회차 보고서 양식 ····· 26
Ⅳ. 4~6회차 보고서 양식 ····· 32
Ⅴ. 7회차 보고서 양식 ····· 42

PART 03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55

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7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 77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77
2.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 83
Ⅲ. 위험성평가란? ····· 97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97
2.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중심 위험요인 발굴 ····· 104

PART 04 | 참고자료 121

Ⅰ.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예시 ····· 123
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신청방법 ····· 163
Ⅲ. K2B 전산시스템 매뉴얼 ····· 166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ART
01

사업추진방법

Ⅰ. 안내서 활용방안 3
Ⅱ. 단계별 추진 절차(위탁) 5

I

안내서 활용방안

Ⅰ 안내서 활용방안

안내서 구성 및 활용방안

- 단계별 추진 절차
  - 회차별로 수행하여야 할 기술지원 내용과 사업장에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내용
- 회차별 보고서 양식
  - (1~7회차별 보고서) 회차별 컨설팅 종료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제공
  - (7회차 종합 및 요약 보고서) CEO 면담 전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면담 및 강평 시 활용하고, **컨설팅 후 최종 보고서 사업장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내용에 대하여 소개
-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
  -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예시)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사업장 스스로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지도
- K2B 전산시스템 매뉴얼(예시)
  - K2B 매뉴얼을 참고하여 컨설팅 후 보고서 및 자율점검표 등을 K2B에 업로드 및 전산 입력

☑ 지원 시 주의사항

❶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을 제공하고, 사업장의 업종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❷ 각 컨설팅 회차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스스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컨설팅 단계별로 변화를 유도

※ 제공된 매뉴얼(예시)만으로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증빙)될 수 없으며, 매뉴얼(예시)을 참조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함을 반드시 사전 안내

Ⅱ

단계별 추진 절차(위탁)

Ⅱ 단계별 추진 절차(위탁)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 (회차)	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❶회차 (본사)	○ 사업 안내 ○ 체계구축 실태파악 ○ 자체 매뉴얼 작성안내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사업주 면담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사업장 기본 정보 파악 ○ 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체계구축 실태파악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를 제공하고 자체 매뉴얼 작성 안내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안내 ○ 사업주 면담	1인 1조 (1회차 ~ 3회차)
❷회차 (현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체교육 (공동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준비	○ 본사 담당자 및 업체 소속 현장소장(또는 관리감독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이론 교육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 현장 관련 내용 안내 – 현장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안내 – 현장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및 참관 사전 안내 ○ 본사 담당자가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이행할 위험성평가 절차 및 본사 보고 방법 등 안내	
❸회차 (본사)	○ 본사 체계구축 재점검 ○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 사업장 스스로 작성한 매뉴얼에 대한 재점검 – 점검표를 활용하여 체계구축 발전 과정 파악 – 체계구축 자체 매뉴얼 구축 여부 확인 및 구축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 ○ 사업장 스스로 작성한 위험성평가 실행절차가 사업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피드백	
❹회차 (현장)	○ 위험성평가 컨설팅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위험성평가 컨설팅 – 본사담당자, 현장관계자, 컨설턴트가 함께 현장 점검 및 주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및 피드백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❷회차 교육에 따른 현장 매뉴얼 구축여부 확인 및 지도 – 본사담당자를 통해 지도내용 타 현장 전파	2인 1조 (4회차 ~ 6회차)

단계 (회차)	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❺회차 (현장)	○ 위험성평가 컨설팅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위험성평가 컨설팅 – 본사담당자, 현장관계자, 컨설턴트가 함께 현장 점검 및 주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및 피드백 – ❹회차 지도내용의 현장 반영여부 확인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자체 매뉴얼 구축여부 및 ❹회차 지도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 본사담당자를 통해 지도내용 타 현장 전파	
❻회차 (현장)	○ 위험성평가 컨설팅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위험성평가 컨설팅 – 본사담당자, 현장관계자, 컨설턴트가 함께 현장 점검 및 주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및 피드백 – ❺회차 지도내용의 현장 반영여부 확인 ○ 현장 자체 매뉴얼 확인 – 자체 매뉴얼 구축여부 및 ❺회차 지도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 본사담당자를 통해 지도내용 타 현장 전파	
❼회차 (본사)	○ 체계구축 현황 컨설팅 ○ 사업주 면담 및 최종 강평	○ 체계구축 현황 컨설팅 – 최종 점검표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피드백(종합·요약보고서 제공) ○ 사업주 면담 및 최종 강평 –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의 체계구축 변화과정 안내 – 부족한 부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구축의 이행을 위한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당부	1인 1조 (7회차)

1회차(본사) 방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체계구축 실태 파악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을 제공하고 자체 매뉴얼 작성 안내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안내
  - 본사담당자가 2회차 집체교육 시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위험성평가 절차 및 본사 보고 절차를 직접 교육하여야 함을 안내
- 2회차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체교육(공동 컨설팅) 장소 및 시기 논의
  - 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협의
- 경영층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및 본사담당자 지정 등 지원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컨설팅 안내	○ 컨설팅 방문 목적 및 절차 안내 ※ 방문전 사전안내: 방문일정 등 매월 안내문 발송, 경영층(CEO) 면담 2회 실시 안내 등
경영자 면담 및 체계관리 등 안내	○ 경영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위험성평가와 연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개념 안내
안전보건 활동수준 파악 및 컨설팅	○ (기본 안전보건정보) – 주 건설업종, 직원수 및 현장수, 재해현황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사업장의 체계구축 실태파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동 매뉴얼을 참고로 사업장 스스로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안내(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등)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2회차 집체교육 전까지 마련하고, 2회차 집체교육 시 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하도록 안내 ○ (2회차 집체교육 논의) – 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일정 논의
컨설팅 결과 강평	○ 사업주, 대표이사, CEO 등 경영층 면담 및 경영자 의지와 근로자 참여 중요성 안내 ○ 사업장 체계구축 현황 및 개선점 강평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사업장 제공용 보고서) – 1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평서, 세부내용) 작성 및 송부(7일 이내) ○ (보고서 K2B 입력) – 1회차 보고서 및 자율안전점검표 각각 업로드(10일 이내) – 자율안전점검표 K2B 입력

2회차(현장: 집체교육) 방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체교육(컨설턴트)
  - 본사 담당자, 업체 소속 현장소장(또는 관리감독자) 및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이론 교육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 관련 내용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매뉴얼 작성 안내
- 위험성평가 교육 및 시범실시 안내(컨설턴트)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방법교육 실시
  - 향후 현장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및 참관 사전 안내
- 위험성평가 절차 교육(본사 담당자)
  - 본사 담당자가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이행할 위험성평가 절차 및 본사 보고 방법 등 안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장소 및 일정 확인	○ 1회차 컨설팅 시 본사 담당자와 협의된 교육장소 및 일정 가능여부 사전 확인
집체교육	○ 본사 담당자, 소속 현장소장(또는 관리감독자), 해당 현장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집체교육 실시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예시) 관련 내용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매뉴얼 작성 안내
위험성평가 교육	○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향후 현장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및 참관 사전 안내
위험성평가 절차 교육	○ 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향후 이행할 위험성평가 절차 및 본사 보고 방법 등 안내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사업장 제공용 보고서) – 2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교육내용,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세부내용) 작성 및 송부(7일 이내) ○ (보고서 K2B 입력) – 2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 업로드(10일 이내)

3회차(본사) 방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본사 체계구축 재점검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체계구축 발전 과정 파악
  - 체계구축 자체 매뉴얼 구축 여부 확인 및 구축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
  - 자체 매뉴얼 미완성 구간에 대한 컨설팅
  - 자체 매뉴얼 미작성 시 작성 독려
-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 사업장 스스로 작성한 위험성평가 실행절차가 사업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피드백
  -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미작성 시 작성 독려
- 4~6회차 방문현장 논의
  - 4~6회차 컨설팅 실시할 현장 및 방문 일정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활동수준 파악 및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사업장의 체계구축 발전 과정 파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체계구축 자체 매뉴얼 구축 여부 확인 및 구축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
- 자체 매뉴얼 미완성 구간에 대한 컨설팅
- 자체 매뉴얼 미작성 시 작성 독려

○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 사업장 스스로 작성한 위험성평가 실행절차가 사업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피드백
-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미작성 시 작성 독려

○ (4~6회차 컨설팅 현장 논의)
- 4~6회차 컨설팅 실시할 현장 및 방문 일정 논의

컨설팅 결과 강평

○ 사업장 체계구축 현황 및 개선점 강평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사업장 제공용 보고서)
- 3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평서, 세부내용) 작성 및 송부(7일 이내)

○ (보고서 K2B 입력)
- 3회차 보고서 및 자율안전점검표 각각 업로드(10일 이내)
- 자율안전점검표 K2B 입력

4회차~6회차(현장) 방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위험성평가 컨설팅
- 본사 담당자, 현장관계자, 컨설턴트가 함께 현장 순회점검 및 주요 위험요인 파악
- 현장 근로자를 면담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개선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확인
- 현장 순회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이행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및 피드백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의 체계구축 실태파악
- 자체 매뉴얼 구축여부 확인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 본사 담당자를 통해 지도내용 타 현장 전파 유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요인 파악	○ 본사 담당자, 현장관계자, 컨설턴트가 함께 현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 면담 실시 ↳ 현장 작업 현황 및 이에 따른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의 체계구축 실태파악 ○ 자체 매뉴얼 구축여부 확인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 시범 실시 참관 ○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근로자 등 참여 여부, 위험성평가 절차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지도 실시
CEO 면담 및 최종 강평	○ 현장 체계구축 현황 및 위험성평가 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평 ○ 현장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이행 여부 확인 ○ 본사 담당자를 통해 지도내용 타 현장 전파 유도 ○ 다음회차 준비사항 및 방문일정 논의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사업장 제공용 보고서) – 4~6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및 참석자 서명, 현장 위험성 평가표 포함) 작성 및 송부(7일 이내) ○ (보고서 K2B 입력) – 4~6회차 보고서 및 자율안전점검표 각각 업로드(10일 이내) – 자율안전점검표 K2B 입력 – 사업장 위험수준 현장평가결과 K2B 입력

7회차(본사) 방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컨설팅 요약 보고서 사전 작성

- 7회차(본사) 방문 전 컨설팅 요약보고서 작성 후 CEO 면담 시 강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최종 컨설팅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체계구축 최종 구축 현황 파악
-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진행

■ 경영자 면담

-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의 체계구축 변화과정 안내
- 부족한 부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구축의 이행을 위한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당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계구축 현황 최종 확인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체계구축 최종 구축 현황 파악 ○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진행
경영자 면담 및 강평	○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체계구축 변화과정 안내 ○ 부족한 부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구축의 이행을 위한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당부 ※ 컨설팅 요약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경영자 면담 및 강평 시 활용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사업장 제공용 보고서) - 컨설팅 종합보고서 작성 후 송부(7일 이내) ○ (보고서 K2B 입력) - 7회차 종합 및 요약 보고서와 자율안전점검표 각각 업로드(10일 이내) - 자율안전점검표 K2B 입력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ART
02

회차별 보고서 양식

Ⅰ. 1회차 보고서 양식 16
Ⅱ. 2회차 보고서 양식 22
Ⅲ. 3회차 보고서 양식 26
Ⅳ. 4~6회차 보고서 양식 32
Ⅴ. 7회차 보고서 양식 42

I

1회차 보고서 양식

컨설팅 수행 필수 착안 사항

❶ **사업장 방문 전 사전 정보 파악**
(근로자수, 주요 공정, 유해·위험기계, 취급 화학물질 등)

❷ **사업주, 대표이사, CEO 등 사업장 대표 최소 2회 이상 면담**

❸ **현장 컨설팅(4~6회차) 시 현장 근로자를 면담**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담당자 이외 전체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최대한 유도
* 서류 중심의 형식적 컨설팅 및 담당자 1명만을 상대로 교육 형태의 컨설팅 금지

❹ **현장 컨설팅(4~6회차) 시 현장을 반드시 순회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지속 관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안전표지판 배치,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의식 제고 지도

❺ 컨설팅 초기 단계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종합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고, **핵심 개선사항은 요약보고서**(1p)로 **별도 제공**

❻ 최종(7회차) **컨설팅 전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CEO 면담 및 **강평 시 활용**하고, 컨설팅 종료 후 최종보고서 작성

❼ 종합보고서는 컨설팅 후속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컨설팅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속적 이행을 위한 방향과 역할 부여**
* 종합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 수행기관 평가 예정

Ⅰ 1회차 보고서 양식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1. 본사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명		핸 드 폰 번 호	
주 등록 업종			
직 원 수	명	시공능력평가순위	위 (순위는 종합건설만 작성)
현 장 수	개소 (건축: 개소, 토목: 개소, 기타: 개소)		

재 해 현 황	2022년		2023년		2024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2. 경영 책임자(CEO) 면담

일시	장소	참석자
6.22(수) 14:00	*OO건설㈜ OO회의실*	▪ *수행기관 : 홍길동, 김선달* ▪ *기 업 : 대표이사, 경영전략실장 등 4명*

3. 컨설팅 결과 요약

총 평

컨설팅 지원일 : **2025년 월 일**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상기와 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담당자		(서명) (서명)
	사업장 담당자	본사	(서명)
		현장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서명)

4. 컨설팅 결과 세부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1 경영자 리더십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5 안전보건교육계획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평가 및 개선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양식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회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24개 항목)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1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1-3. 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 이행에 대한 평가 실시					
2-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2-3.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3-1.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운영					
3-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3-3.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점검, 교육, TBM 등을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검토					
4-3.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5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5-2. 안전보건교육 실시					
5-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6-2.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6-3.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7-2.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검토 및 반영					
7-3.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8 평가 및 개선					
8-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검토와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8-2. 평가 등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					
8-3.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Ⅱ

2회차 보고서 양식

Ⅱ 2회차 보고서 양식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집체교육 결과

1. 사업장 현황

회 사 명		현 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개 시 번 호	
소 재 지			
담 당 자 명		핸 드 폰 번 호	
현 장 수	개소 (건축: 개소, 토목: 개소, 기타: 개소)		

2. 교육 현황

장소	참석자 현황
OO건설㈜ OO현장 *교육장*	▪ *현장소장: OO 명* ▪ *관리감독자: OO 명* ▪ *안전관리자: OO 명* ▪ *본사담당자: OO 명*

3. 교육 결과 요약

총 평

컨설팅 지원일 : **2025년 월 일**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상기와 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담당자		(서명) (서명)
	사업장 담당자	본사	(서명)
		현장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서명)

4. 주요 교육 내용

5. 교육 사진 및 참석자 서명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반드시 포함

현장명	직위	이름	서명

Ⅲ

3회차 보고서 양식

Ⅲ 3회차 보고서 양식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1. 본사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명		핸 드 폰 번 호	
주 등록 업종			
직 원 수	명	시공능력평가순위	위 (순위는 종합건설만 작성)
현 장 수	개소 (건축: 개소, 토목: 개소, 기타: 개소)		

재 해 현 황	2022년		2023년		2024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2. 담당자 면담

일시	장소	참석자
6.22(수) 14:00	*OO건설㈜ OO회의실*	▪ *수행기관 : 홍길동, 김선달* ▪ *기 업 : 경영전략실장 등 4명*

3. 컨설팅 결과 요약

총 평

컨설팅 지원일 : **2025년 월 일**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상기와 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담당자**		(서명) (서명)
	사업장 담당자	**본사**	(서명)
		현장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서명)

4. 컨설팅 결과 세부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1 경영자 리더십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구분	컨설팅 내용
5 안전보건교육계획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평가 및 개선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재점검) *사업장 작성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실행절차 피드백	

양식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회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24개 항목)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1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1-3. 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 이행에 대한 평가 실시					
2-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2-3.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3-1.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운영					
3-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3-3.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점검, 교육, TBM 등을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검토					
4-3.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5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5-2. 안전보건교육 실시					
5-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6-2.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6-3.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7-2.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검토 및 반영					
7-3.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8 평가 및 개선					
8-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검토와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8-2. 평가 등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					
8-3.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Ⅳ

4~6회차 보고서 양식

Ⅳ 4~6회차 보고서 양식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1. 사업장 현황

회 사 명		현 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개 시 번 호	
소 재 지			
담 당 자 명		핸 드 폰 번 호	
공 사 규 모		공 사 금 액	
공 사 기 간		공 정 률	
주요 작업 내용			

2. 컨설팅 결과 요약

총 평

컨설팅 지원일 : 2025년 월 일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상기와 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담당자		(서명) (서명)
	사업장 담당자	본사	(서명)
		현장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 . (서명)

3. 컨설팅 결과 세부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1 경영자 리더십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현장 순회점검 필수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5 안전보건교육계획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평가 및 개선	
(문제점·개선방안) (컨설팅 내용)	

4. 근로자 면담결과

(참여자 작업공종 및 성명)

(면담내용)
※ 면담내용에 근로자가 생각하는 유해·위험요인, 근로자가 제안한 유해·위험요인 사업장 실제개선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포함

5. 현장 순회점검 결과 ※ 이전 회차 지도내용의 현장반영여부 지속 관리

장소	유해·위험요인		발생형태	위험정도 (상, 중, 하)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 미개선 시 개선 예정일 기재		

(기타 지도사항)

6. 위험성 평가회의 사진 및 참석자 서명

작업명	직위	이름	서명

7. 현장 위험성 평가표

※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위험성 평가표 스캔본 삽입

양식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회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24개 항목)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1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1-3. 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 이행에 대한 평가 실시					
2-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2-3.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3-1.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운영					
3-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3-3.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점검, 교육, TBM 등을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검토					
4-3.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5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5-2. 안전보건교육 실시					
5-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6-2.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6-3.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7-2.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검토 및 반영					
7-3.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8 평가 및 개선					
8-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검토와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8-2. 평가 등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					
8-3.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양식2 사업장 위험수준 현장평가표 수행기관 작성

사업장 위험수준 현장평가표

소 속	서울광역본부	직 급	4급
성 명	박보건		
수 행 사 업 명	위험성평가	사 업 수 행 일	23/06/07

1. 기본정보

사 업 장 명	B기업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사 업 장 관 리 번 호	11111002220	사 업 장 개 시 번 호	00000000000

2. 평가내용

문 항	평 가	← 저위험		보통	고위험 →	
1) 작업장·근로환경		1	2	3	4	5
		완전히 한눈팔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 같다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잘 관리 중이다		전체적으로 꽤 위험해 보인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환경이다
2) 근로자 안전보건 행동 수준		1	2	3	4	5
		안전보건을 철저하게 지킨다	안전보건을 대체로 지키는 편이다		안전보건을 형식적으로 지키나 귀찮아 한다	위험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3) 사업주·관리자 등 안전의식		1	2	3	4	5
		안전보건 경영을 실천 중이다	안전보건에 스스로 관심이 있고 규정도 지키려 한다		서류 작업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안전보건에 관심 없다

3. 기타 ※ 사업장에서 느낀 바를 자유롭게 기재

V

7회차 보고서 양식

V 7회차 보고서 양식

컨설팅 요약보고 양식(사업장 제공용)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업 종	
소 재 지		근 로 자 수	
담 당 자	(성명) (연락처)	컨 설 턴 트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1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후 조치*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우리 사업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등 핵심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개선방안) 리튬 등 위험물질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화재·폭발 대비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예) 위험물질에 맞는 소화설비·장비 구비, 화재 대피 교육 등 비상대응조치 마련, 비상구 확보 등*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 (우리 사업장은?) 과거 발생한 화재 사고(부상 1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방안)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합니다.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공정의 작업자 의견을 듣고, 소방전문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의 조언·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는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합니다.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호***

○ (우리 사업장은?) 공정별 관리감독자 외에 일반근로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 (개선방안) 안전보건신문고, 아차사고 게시판, SNS 소통방 등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등에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합니다.
- 사업장 내 수급인(B사)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급인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이것만은 꼭! 즉시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사진	개선방법
화기 및 물기 접촉 시 화재·폭발 위험	*사진*	*○ 리튬전지 보관 구역 재설정, 제조-용접 작업 구간 분리,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리튬전지 보관 시 화재·폭발 확산 위험	*사진*	*○ 난연 재질의 트레이에 전지 분리 보관 실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시 인명 피해 위험	*사진*	*○ 비상대피로 방향 표시,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 2~3개 설치*

컨설팅 종합보고 양식(사업장 제공용)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2025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2025. 03.

컨설팅 사업장명 : OO건설(주)

수행기관 로고

수행기관명

목 차

Ⅰ. 일반현황 ····· 00

Ⅱ. 총 평 ····· 00

Ⅲ. 개선 및 권고사항(요약) ····· 00

Ⅳ. 구축요건별 세부사항 ····· 00

1. 경영자리더십 ····· 00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 00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 00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00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00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 00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 00

8. 평가 및 개선 ····· 00

Ⅰ 일반현황

컨설팅 사업장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명		핸 드 폰 번 호	
주 등록 업종			
직 원 수	명	시공능력평가순위	위 (순위는 종합건설만 작성)
현 장 수	개소 (건축: 개소, 토목: 개소, 기타: 개소)		

재 해 현 황	2022년		2023년		2024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수행기관 현황

기 관 명	OO재해예방						
수 행 요 원	홍길동(KOSHA-MS 심사원), 김선달(건설안전기사)						
방 문 일 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3(월)	일자 기입	일자 기입	일자 기입	일자 기입	일자 기입	일자 기입

경영책임자 면담

일시	장소	참석자
6.22(수) 14:00	OO건설㈜ OO회의실	■ 수행기관 : 홍길동, 김선달 ■ 기 업 : 대표이사, 경영전략실장 등 4명

Ⅱ 총평

- OO건설은 OOO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전국 OO개소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XX건설, YY건설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5년간(2019년~현재)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O명(사고사망자 O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경영층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효과 분석

〈컨설팅 수준 평가 결과(예시: 5점척도)〉

	1회차	4회차	7회차
○ 경영자 리더십	1	3	4
○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1	3	5
○ 근로자 참여	1	2	4
○ 유해위험요인 개선	1	3	3
○ 안전보건교육	1	2	2
○ 비상 시 조치	1	2	3
○ 협력업체 지원	1	2	4
○ 평가 및 개선	1	2	4

※ 수준평가 1회차→4회차→7회차 결과를 8개 항목도표로 표시하여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의 체계구축 변화과정 표시

- **본사 안전보건조직** 확인 결과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조직이나 안전보건 관련 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는 없는 상태임
  - 주요 안전보건활동은 위험성평가 정기적인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제안제도 활성화 등 ~~~~
- 현장 안전보건조직 확인 결과,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OO명(정규직 O명/비정규직 O명), 보건관리자는 O명 보유하고 있으며, ~~~~
  - 주요 안전보건활동은 위험성평가 정기적인 실시 등 ~~~~
- 컨설팅 결과 핵심사항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 총평 1쪽 내외로 작성

Ⅲ 개선 및 권고사항(요약)

항 목	주요 내용
1 경영자리더십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5 안전보건교육계획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평가 및 개선	

Ⅳ 구축요건별 세부사항

1 경영자리더십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5 안전보건교육계획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평가 및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양식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회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24개 항목)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1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1-3. 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 이행에 대한 평가 실시					
2-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2-3.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3-1.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운영					
3-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3-3.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점검, 교육, TBM 등을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검토					
4-3. 위험성평가와 관련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실시
5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5-2. 안전보건교육 실시					
5-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6-2. 시나리오 및 비상시 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6-3.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7-2.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검토 및 반영					
7-3.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8 평가 및 개선					
8-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검토와 성과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8-2. 평가 등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					
8-3.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정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ART
03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7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77
Ⅲ. 위험성평가란? 97

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58
제2조(정의) ····· 58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 60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60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63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64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64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65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66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68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71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72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72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3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73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7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58
제2조(직업성 질병자) ····· 58
제3조(공중이용시설) ····· 59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60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3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65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66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66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7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68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1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72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 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❶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❷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충실히 이뤄진 경우 처벌되지 않음

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같은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❶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 방향·목표를 수립하고 근로자와 공유

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

❸ 근로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❹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❺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❻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❼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평가 및 지원

❽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여부 검토와 성과측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이행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에만 2,098명이 업무상 사고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관련법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판결 결정문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 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결정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 36조 4,247억원**, **근로손실일수 6,385만 일**(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4. 1. 27.부터 전면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 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렇게 구축하세요!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적극적
책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평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 점검
목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념도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의 여러 기능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통합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인체에 비유하여 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12대 구성 요소

머리 의사결정 기능

1 리더십
경영책임자의 안전 리더십 외부 표출
결과물 · 신년사, 안전선포식, 교육 시 의지표명

2 안전경영 방침·목표
방침은 명확·간단히, 목표는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
결과물 · 방침·목표를 한 장으로 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부착

3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본 방향 및 내용
결과물 ·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매뉴얼 등

손·발 결정사항 집행

4 조직
안전경영 방침·목표, 위험성평가 등 체계적 집행
결과물 · 안전보건 조직도

5 인력
기업의 규모와 여력 등을 고려 최대 수준 확보
결과물 ·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

6 예산
소액이라도 안전보건 전용 예산 확보, 대표자 결재로 집행
결과물 · 안전보건 예산편성표
* 세분화하지 않고 총액편성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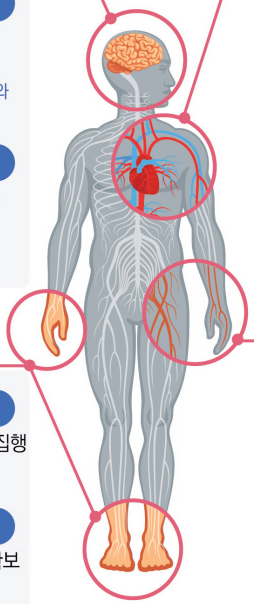

혈액 결정사항 수행도구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행, 결과 공유
결과물 ·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성·보관

8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 전달하는 핵심수단
결과물 · TBM 일지 작성·보관

9 안전보건교육
연초에 교육일정 수립, 일정에 맞춰 시행
결과물 · 연간 교육일정표

자율신경 체계의 자율회복 수단

10 비상조치계획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공유, 주기적 훈련
결과물 · 비상대응 매뉴얼
· 반기별 매뉴얼 준수여부 점검

11 재발방지대책
사고원인 분석, 대책 마련·이행, 근로자 교육
결과물 ·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결과

12 점검·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개선
결과물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및 조치 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필수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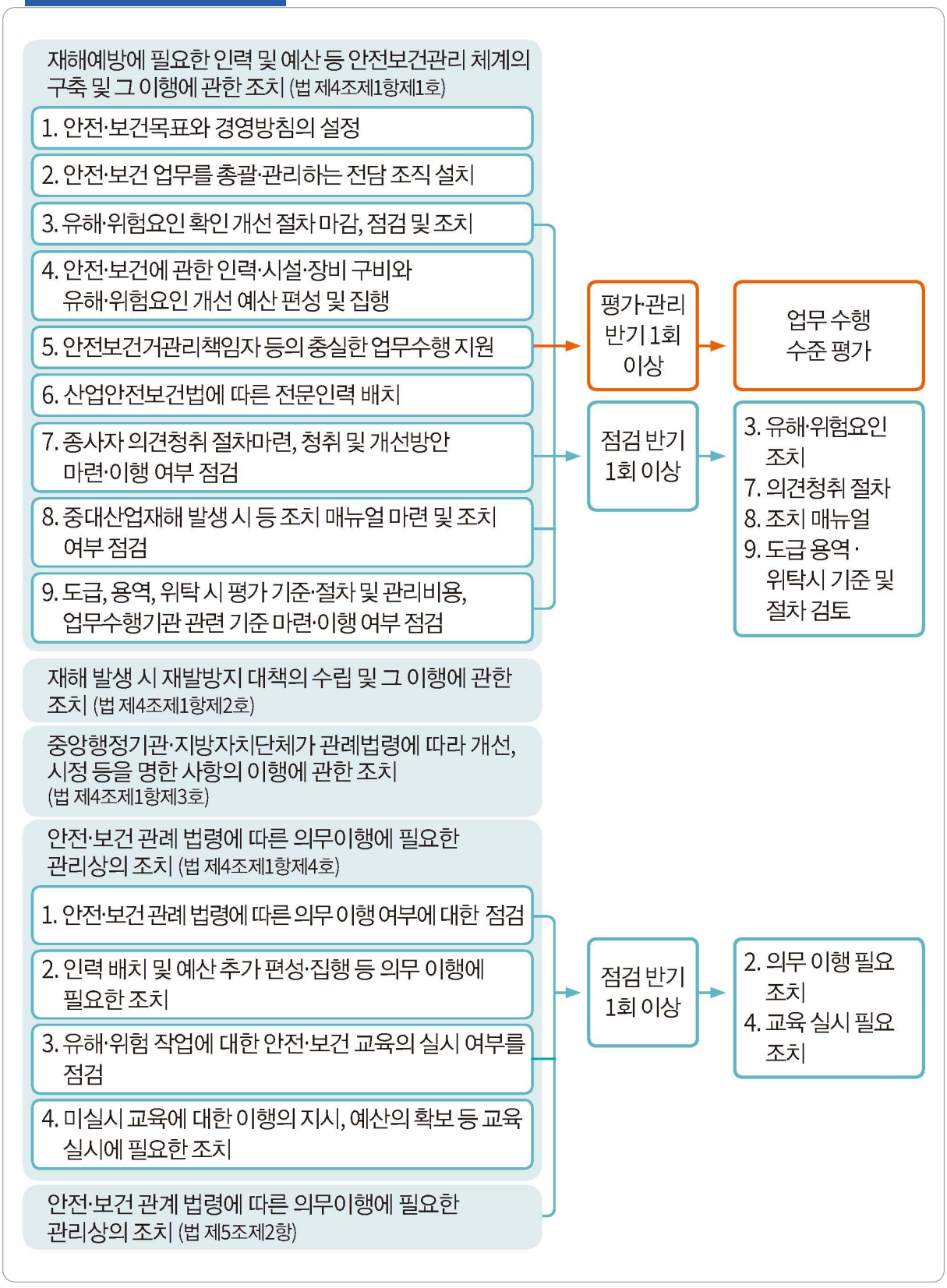

2.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1 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식** 및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부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까지 종국적으로 영향을 받음에 따라
  -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요구**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1.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될 것
  2.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할 것
  3.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할 것
  4.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할 것
  5.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안전보건방침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
  - ❶ 구체적일 것
  - ❷ 측정이 가능할 것
  - 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 안전보건목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함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❶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일정·소요자원 등)
  - ❷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할 것
  - ❸ 추진결과를 측정할 지표를 포함할 것
  - ❹ 목표와 추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
-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함

실행 TIP

■ 체계구축 도입 단계에서는 가급적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 목표

예시) 현장별 매월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성평가 정착

→ 추진계획

예시) (현장) 매일 TBM 실시 결과 본사 보고
(현장) 매월 위험성평가 회의 실시 결과 본사 보고
(본사) 현장별 년 2회 위험성평가 현황 방문모니터링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 해당 업무의 적정한 수행여부를 평가 및 관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참여를 촉진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
  - (본사) 연간 안전보건예산 운용계획 수립
  - (현장) 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 본사 및 현장 조직 구성에 맞게 책임과 권한 부여
  - 각 계층의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하여 공유
- 조직의 각 계층의 모든 근로자에게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함

실행 TIP

■ 건설업 특성상 각각의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본사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위험성평가 모니터링, 현장 안전보건활동 평가 등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촉진

→ 일부 건설사에서는 현장 안전보건활동 평가결과를 인사고과 또는 인센티브에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도 함

관련법 참고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며,
  -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위험을 실용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회의, TBM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실행 TIP

■ 일부 건설사에서는 정기적인 근로자의 참여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안전신고제(작업중지제), 안전제안제 등을 운영하기도 함

→ 안전신고제

예시) 현장의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SNS 등을 활용하여 안전조치 개선 또는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관리감독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

관련법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및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체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자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근로자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 이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위험성평가

- 본사에서는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소속 현장과 공유하여야 함
- 본사에서는 소속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 구성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함
- 본사 조직은 소속현장의 위험성평가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세부사항은 97page '위험성평가란?' 참조

실행 TIP

■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업체 등은 현장소장 1명, 공무과장 1명 등으로 현장조직이 열악하여 위험성평가가 가능한가요?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반장을 위험성평가회의에 참여시켜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및 TBM을 통한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전파, 감소대책 이행 확인 등의 역할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의의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사업장이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지속적인 교육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 및 각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및 각각의 역할과 책임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의의

- **(비상 시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해당 매뉴얼은 긴급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 **(재발방지대책)** 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비상조치계획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수립
-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 안전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수 있음
-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
  -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재발방지대책

- 현장에서는 사고(아차사고 포함)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본사에 보고
-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보고된 사고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계 개선방향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소속 현장에 배포

실행 TIP

■ 사고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은 위험성평가 개선, 표준작업절차 마련,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개선 할 수 있음

→ (위험성 평가 개선) 다음의 항목들을 점검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

1. 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파악되었는지?
2. 위험·요인이 사전에 파악되었다면 안전대책의 수립은 적정했는지?
3.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이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전파되었는지?
4. 안전대책의 이행에 대한 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표준작업절차)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특정 작업에 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작업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준작업절차를 정하고 이를 소속 구성원에게 전파 및 교육

예시) 갱폼 해체 및 양중 절차, 배관 수압 및 기압테스트 작업 절차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의의

- 도급인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험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은 쉽지 않음
  - 이를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 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 본사 안전보건부서장과 계약관련 부서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계약 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본사에서는 협력업체 수준평가 절차,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현장에 배포
- 현장에서는 본사에서 배포한 평가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 평가 및 본사 보고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평가 및 개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체계의 단순한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체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과평가

-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이 정기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시 대비,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행·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여부 평가
  - 소속현장의 구성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평가

지속적 개선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정조치의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경영자 검토

-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성과평가 결과 및 지속적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최고경영자는 검토결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하여야 함

Ⅲ

위험성평가란?

Ⅲ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❶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❷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❸ 또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❶**안전보건관리책임자** ❷**관리감독자** ❸**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❹**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정보·위험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 언제 실시해야하는가?

-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공정변경, 작업내용, 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등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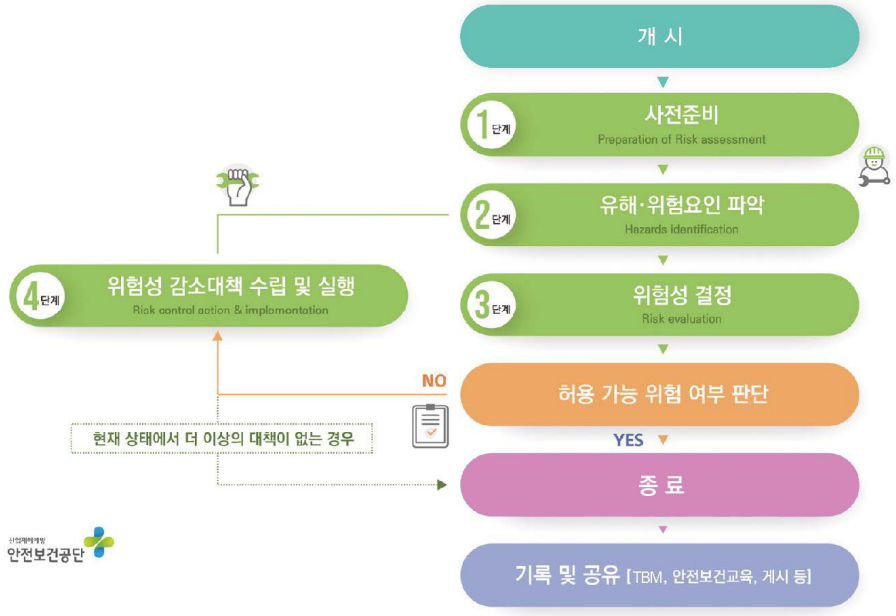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닌 순환의 개념

1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❶평가의 목적* 및 방법, ❷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❸평가 시기 및 절차, ❹근로자에 대한 공유·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⑤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 위험성평가 교육(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안전보건정보* 수집

    *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등,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도급사업장이 있는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등

-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평가대상 분류 방법 예시

- (공정 또는 작업) 가공, 조립, 용접 등 생산공정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
- (기계·기구별 구분) 지게차, 프레스,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재해유형별 구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잠재된 재해유형 별로 분류

2 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위험요소 파악 방법 예시

- 작업장을 순회하며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관찰한다.
- 어떤 업무활동과 과정이 가장 위험한지, 작업장의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한지 근로자와 함께 관찰한다.(체크리스트 등 활용)
-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동종업종의 조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고사례 등을 수집한다.
- 사고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장기적 유해요소(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역시 고려하여 관찰한다.
- 화학물질 MSDS, 기계·기구·장비 제조업체의 지침 또는 데이터 시트를 확인한다.
- 평가자가 식별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놓쳤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한 직원들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본다.

3 3단계: 위험성결정

●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사내 규정**으로 확정된 ❶**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❷**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절차에 따라 비용 효율적 해결책 적용**을 위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할 때

–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위험한 요인을 먼저 해결하고,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요인을 향후에 개선하는 것

위험성수준 결정 예시

1. 3단계 판단법(위험성 수준을 3개 등급 이상으로 나누고 결정)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판단 기준
상(빨강)	매우 높음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허용 불가능
중(노랑)	중간	○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초록)	매우 낮음	○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허용 가능

■ 위험성의 수준을 3개 이상으로 등급화한 3단계 판단법에 활용 가능한 예시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규정하면 됩니다.

■ 다만, 부상의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에 따른 기준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은 추가적인 기준 또는 위험성평가 참가자들의 협의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합니다.

위험성수준 결정 예시

2.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법(안전조치가 충분한지에 따라 위험성 수준을 나누고 결정)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판단 기준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	보완(X)	○ 급박한 위험이 있음 (예) 작업중지요청 상태, 유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됨 ○ 안전·보건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예)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조치되지 않음, 회사의 규정에서 벗어남, 사고가 발생함 ○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가 권장됨 (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음, 안전보건자료(모범사례)에 조치 가능한 예시가 있음	허용 불가능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함	적합(○)	○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조치가 유지되고 있음 (예) 감소대책 수립 순서에 따라 제거·대체→공학적대책→관리적대책→개인보호구 순서를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검토·적용함)	허용 가능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항목에 대해 현재의 안전조치 상태를 고려하여 위험성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수준, 즉 허용 가능한지 허용 불가능한지 결정합니다. 이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요인은 추가적인 개선(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포함한 **개선(통제)조치**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충분한지? 평가**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특정 위험요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위험성을 낮추었는가**를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수준 결정 예시

3. 빈도·강도법(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판단)

❶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하여 위험성의 수준(크기)을 판단

※ 위험성 수준은 곱하는 방법 외에도 더하거나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사용할 수 있음

❷ 위험성의 수준을 나눔

※ 아래 예시는 3단계(높음(6~9), 보통(3~4), 낮음(1~2))로 나누었으나 5단계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

위험성수준 결정 예시

〈위험성의 수준 판단〉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여부의 결정 및 관리 기준〉

위험성 수준		허용 가능 여부	관리기준
6 ~ 9	높음	허용 불가능	○ 감소대책 수립+관리감독자 확인+안전관리자 확인
3 ~ 4	보통		○ 감소대책 수립+관리감독자 확인
1 ~ 2	낮음	허용 가능	○ 현상태 유지

4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중 명확한 ❶**중대재해 발생 위험,** ❷**다수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질병발생 위험,** ❸**동종업종 사업장의 사고발생 또는 질병발생 사례** 등이 있는 항목의 개선대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장 빨리 개선하여야 함**

-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

5 5단계: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 보관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 있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지 작업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참고자료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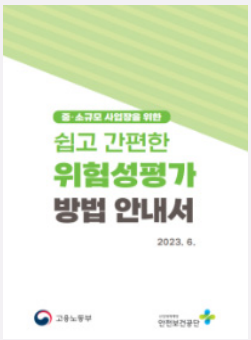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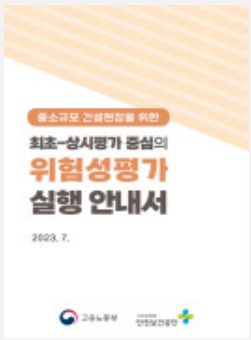

〈참고자료 내려받는 곳〉

- 각종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 자료실 〉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2.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중심 위험요인 발굴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고위험요인 중심(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위험성평가?

■ **사고사망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 집중

→ 모든 재해유발 요인이 **사고사망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음**

■ **실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를 분석하여 고위험작업 및 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정보' 개발
  -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토대로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업종별·공종별로 작성
  - 제조업 등은 고위험작업·상황 35개, 재해유발요인 101개 유형으로 분류

    ※ 자료항목: 업종(대·중·소), 기인물, 재해 개요,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 건설업은 12개 공종별로 고위험작업·상황 113개(작업 49개, 단위작업 113개), 재해유발요인 1,687개 유형으로 분류
-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정보' 제공 및 활용(excel)
  -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KRAS(http://kras.kossha.or.kr)에 탑재하여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정보' 활용 방법(엑셀자료일 경우)

1단계

○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에서 **핵심위험요인 정보(엑셀파일) 다운로드 및 열기**

2단계

○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재해발생 사례 검색

→ **(방법 1)** 업종,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등 정보를 조합하여 **필터링**

→ **(방법 2)** 파일에 탑재해 놓은 검색 기능을 사용해 **키워드로 재해사례 검색**

3단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제 발생한 재해사례 확인**

※ 약 4,400여건의 상세 재해 개요 제공

→ 사고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고위험 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 정보를 습득

4단계

○ **재해 사례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작업/상황과 재해유발요인을 기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표 작성 시 연계**

→ 재해유발요인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보건조치를 검토하여 감소대책 수립

→ **실제 중대재해로 이어진 유해·위험요인이므로 위험성 수준을 높게 결정**

→ 재해유발요인을 활용해 사업장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3 산업재해 고위험요인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지원

-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파악된 고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유발요인을 고려한 통제방안 검토 및 감소대책 지원

〈예시〉

산재업종			재해개요	기인물	재해유발요인	위험성감소대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토공사	1.1 굴착작업	1.1.1 굴착 장비반입	2017년 9월경 OO공사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공업용수관(L=9.1m)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하역 중 달기체인 부재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관이 낙하하면서 하부에 있던 재해자가 머리에 맞아 사망	굴착기	굴착기 붐에 달기체인을 연결한 후 공업용수관의 양단에 훅을 걸어 인항 및 하역하던 중 커넥트링이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관이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재해자가 맞음	○ 중량물 인양시 Sling rope 각도에 따른 안전하중 값을 고려해 줄걸이 안전 수칙 준수 ○ 양중용 달기구의 변형 여부 사전점검 실시 ○ 자재 인양에 적합한 기계장비 사용

4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사례

높은 장소 작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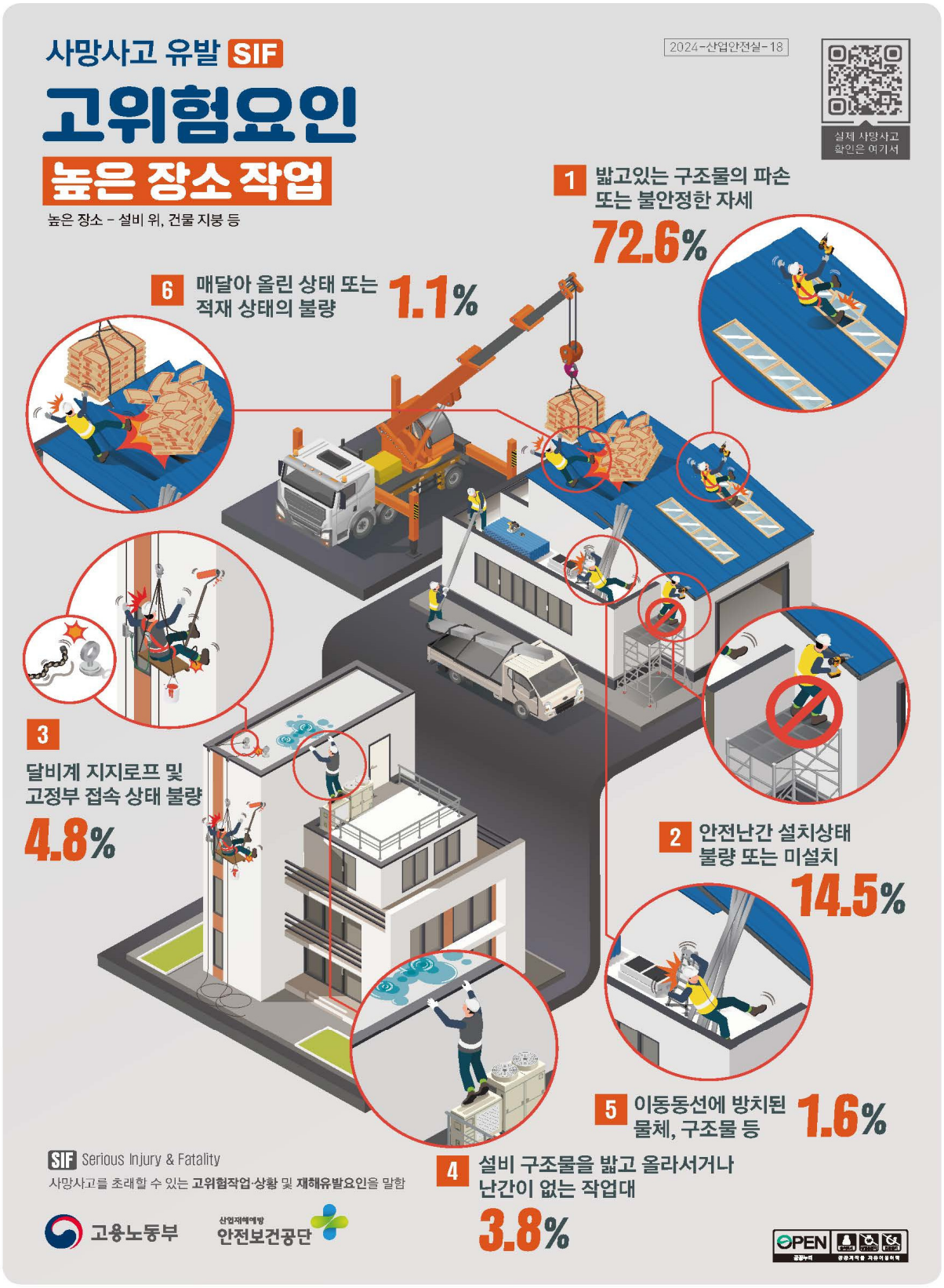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높은 장소 작업

1

무엇이 위험한가요? 밟고있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마감재 파손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설치
- 작업 장소에 지붕 사다리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 사용

2

무엇이 위험한가요?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근로자의 안전대 체결여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실시

3

무엇이 위험한가요?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접속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달비계 로프를 결속
- 지면까지 닿는 적정한 길이의 달비계 로프 사용
- 별도의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4

무엇이 위험한가요? 설비 구조물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이 없는 작업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 작업발판의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5

무엇이 위험한가요? 이동동선에 방치된 물체, 구조물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근로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
- 구조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락 위험장소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이동

6

무엇이 위험한가요?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반하는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
-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고정(랩핑 등)
- 임시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의 화물 적재 금지

사다리 사용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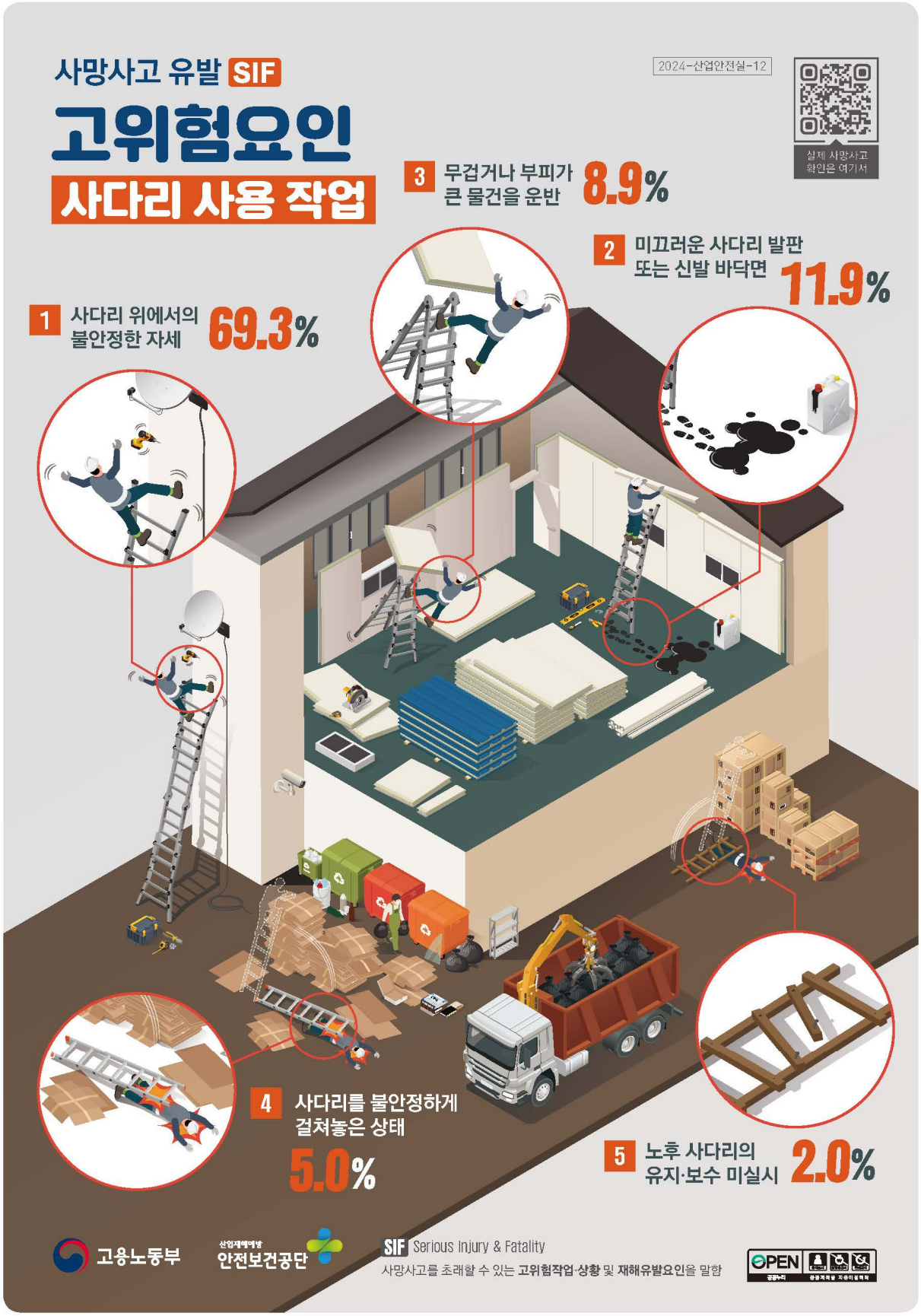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사다리 사용 작업
2024-산업안전실-12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1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69.3%
2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11.9%
3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 8.9%
4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 5.0%
5 노후 사다리의 유지·보수 미실시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OPEN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사다리 사용 작업

1

무엇이 위험한가요?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사다리보다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고 사용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의 경우 3.5m미만 사다리를 사용하고 보호구(안전대 등)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

2

무엇이 위험한가요?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사다리 발판 또는 바닥면의 오일, 물 등을 제거
- 사다리 발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사용

3

무엇이 위험한가요?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반물을 소분하여 무게를 줄이고 체인블럭 등 운반기구 사용하여 운반
- 2인 1조로 운반 시 상부에 위치한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체결
- 사다리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떨어지더라도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4

무엇이 위험한가요?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사다리는 평탄한 곳에 거치하고 상부는 견고한 곳에 거치
- 이동 높이에 맞는 충분한 길이의 사다리 사용
-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사용

5

무엇이 위험한가요? 노후 사다리의 유지·보수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사용 전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
- 목재 사다리 등 임시 사다리의 경우 썩어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루미늄 재질 사다리 사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건설기계 작업 I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I

2024-산업안전실-9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2 근로자와 건설기계의 이동동선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 **14.0%**

6 작업자 간 의사소통 미실시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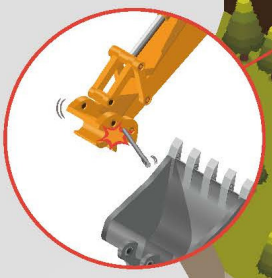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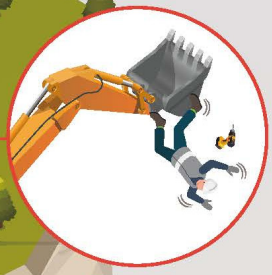

1 장치 연결부 체결 미흡 또는 미실시 **16.0%**

5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로 사용 **8.0%**

3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12.0%**
*급 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4 건설기계의 지지면 등 지반 상태 **1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I

1

무엇이 위험한가요? 장치 연결부 체결 미흡 또는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작업 전 안전핀 체결 상태, 방호장치 작동여부 등 점검 실시
-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실시

2

무엇이 위험한가요? 근로자와 건설기계의 이동동선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건설기계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운반물의 형태·무게, 작업방법, 운반경로, 혼재 작업 여부 등
-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3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버킷, 포크,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이탈
-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4

무엇이 위험한가요? 건설기계의 지지면 등 지반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작업 전 건설기계 작업구간의 지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반 침하로 인해 건설기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5

무엇이 위험한가요?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로 사용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굴삭기 버킷에 탑승하는 등 고소작업대 대용으로 사용 금지

6

무엇이 위험한가요? 작업자 간 의사소통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전자와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 간 의사소통 방법(신호체계)을 통일하고 작업 상황에 대해 수시 공유
-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와 건설기계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자는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건설기계 작업 II

2024-산업안전실-8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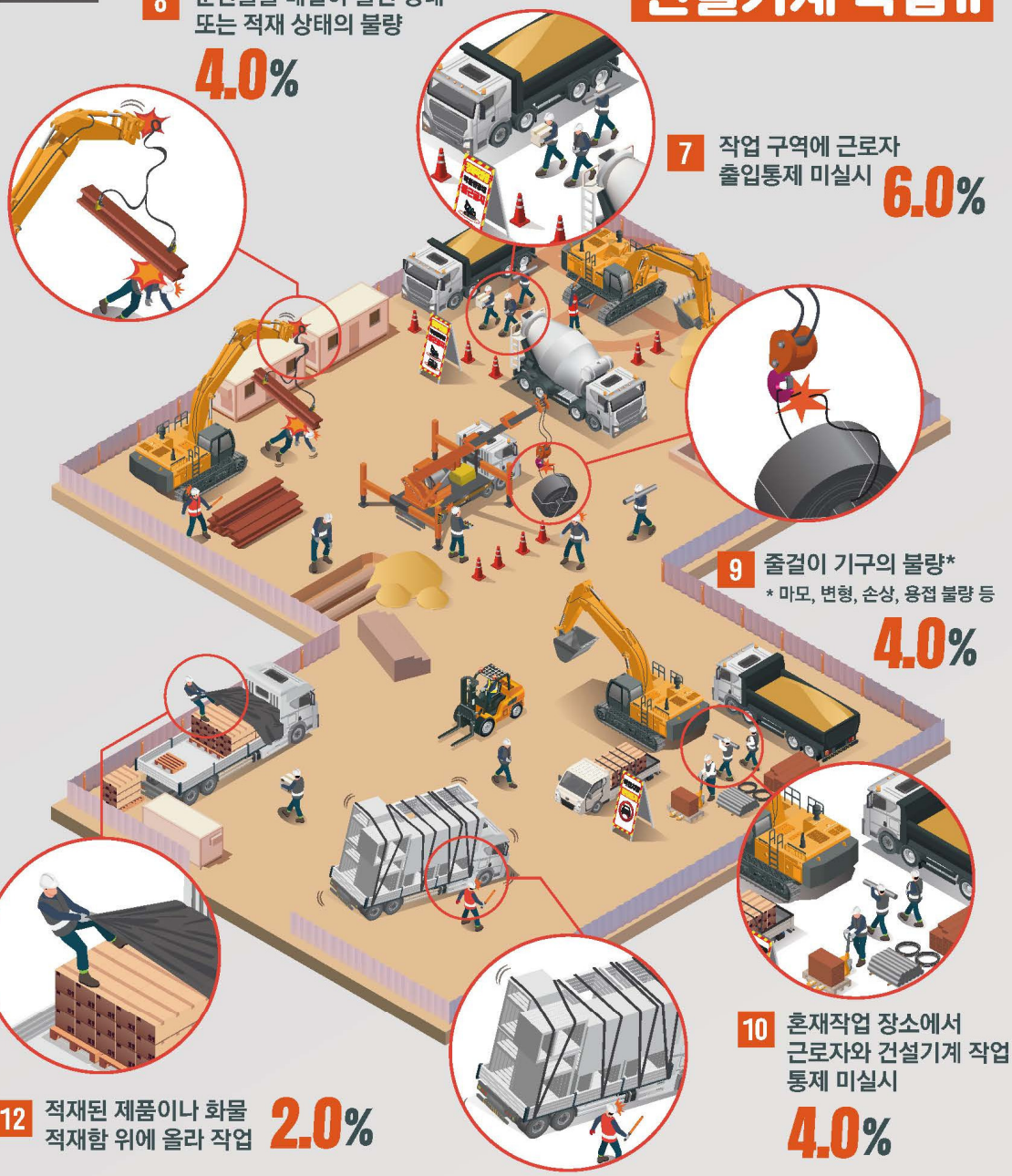

8 운반물을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4.0%**

7 작업 구역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6.0%**

9 줄걸이 기구의 불량*
* 마모, 변형, 손상, 용접 불량 등
4.0%

10 혼재작업 장소에서 근로자와 건설기계 작업 통제 미실시 **4.0%**

11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4.0%**

12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 작업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건설기계 작업 II

7

무엇이 위험한가요? 작업 구역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 운반물의 형태·무게, 작업방법, 운반경로, 혼재 작업 여부 등

8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반물을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반하는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
-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고정(랩핑 등)
- 임시로 적재한 설비 구조물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수평으로 적재

9

무엇이 위험한가요? 줄걸이 기구의 불량 (마모, 변형, 손상, 용접 불량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줄걸이 기구 폐기(관리) 기준을 마련
- 줄걸이 기구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줄걸이 기구 폐기 조건 발생 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폐기

10

무엇이 위험한가요? 혼재작업 장소에서 근로자와 건설기계 작업 통제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운반물의 형태·무게, 작업방법, 운반경로, 혼재 작업 여부 등
-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11

무엇이 위험한가요?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하고 과적 금지
- 팔렛트 등을 사용해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 운반 중 하중이 한쪽으로 몰려 단위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 상태를 고려

12

무엇이 위험한가요?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 작업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차량 상부작업 시 작업 장소 상부에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
-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 보호 목적
- 적재함에 오르내리기 위한 구조물(사다리,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

고소작업대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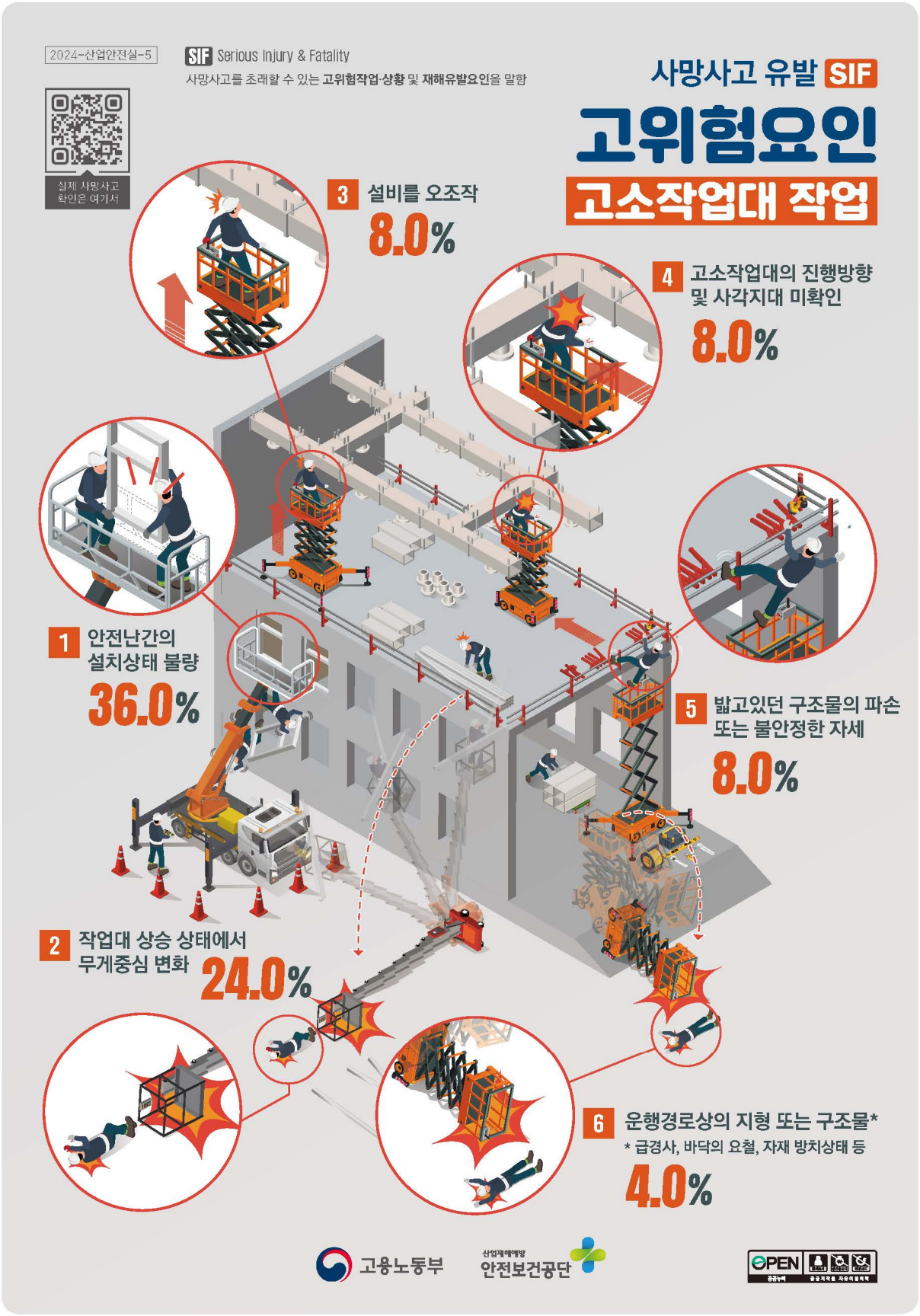
2024-산업안전실-5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고소작업대 작업
3 설비를 오조작
8.0%
4 고소작업대의 진행방향 및 사각지대 미확인
8.0%
1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불량
36.0%
5 밟고있던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8.0%
2 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무게중심 변화
24.0%
6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 급경사, 바닥의 요철, 자재 방치상태 등
4.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고소작업대 작업

1

무엇이 위험한가요?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반구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 작업상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2년마다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실시

2

무엇이 위험한가요? 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무게중심 변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고소작업대로 상부 작업장소의 자재를 실어 아래로 내리는 운반용으로 사용 금지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 금지
-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여 지면에 견고하게 지지

3

무엇이 위험한가요? 설비를 오조작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조작하는 고소작업대의 스위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조작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시 과상승 방지장치 사용

4

무엇이 위험한가요? 고소작업대의 진행방향 및 사각지대 미확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고소작업대를 최하단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동
- 고소작업대 운행 시 진행방향을 확인하면서 이동

5

무엇이 위험한가요? 밟고있던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안전난간이나 임시 구조물을 밟기보다는 작업 높이에 적합한 고소작업대를 선정하여 사용
- 작업발판의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6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비닥의 요철, 자재 방치상태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행경로의 바닥에 방치된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이동 금지

크레인 작업 I

2024-산업안전실-22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크레인 작업 I
6 운반물 이동경로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6.4%
2 줄걸이 기구의 불량*
* 마모, 변형, 손상, 용접 불량 등
12.1%
3 줄걸이 방법 불량
11.3%
5 줄걸이가 훅에서 이탈
8.9%
4 작업자 간 의사소통 미실시
8.9%
1 설비 조작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15.3%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크레인 작업 I

1

무엇이 위험한가요? 설비 조작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조작자가 운반 화물의 전체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선정
-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신호에 따라 운반 작업 실시

2

무엇이 위험한가요? 줄걸이 기구의 불량 (마모, 변형, 손상, 용접 불량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줄걸이 기구 폐기(관리) 기준을 마련
- 줄걸이 기구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줄걸이 기구 폐기 조건 발생 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폐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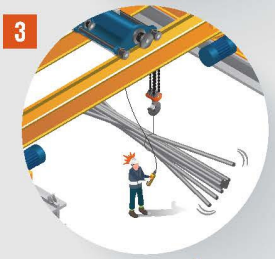

무엇이 위험한가요? 줄걸이 방법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운반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줄걸이 방법(두 줄걸이, 네 줄걸이, 전용 리프팅 장비 등) 선정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 작업자는 적합한 줄걸이 방법(전용 리프팅 장비)을 사용하여 운반물 운반

4

무엇이 위험한가요? 작업자 간 의사소통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크레인 작업자 간 의사소통 방법(신호체계)을 정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작업자 간 작업 상황(특히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에 대해 수시 공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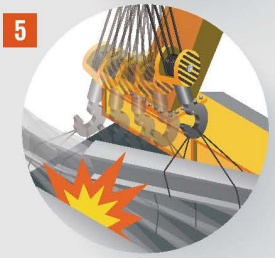

무엇이 위험한가요? 줄걸이가 훅에서 이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인양할 화물의 하중 및 형태를 고려해 체인블록의 훅 선정
- 작업 전 훅 해지장치의 손실, 파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수리 후 사용

6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반물 이동경로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화물을 유도하고 근로자 출입을 통제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 운반물의 형태·무게, 작업방법, 운반경로, 혼재 작업 여부 등

지게차 작업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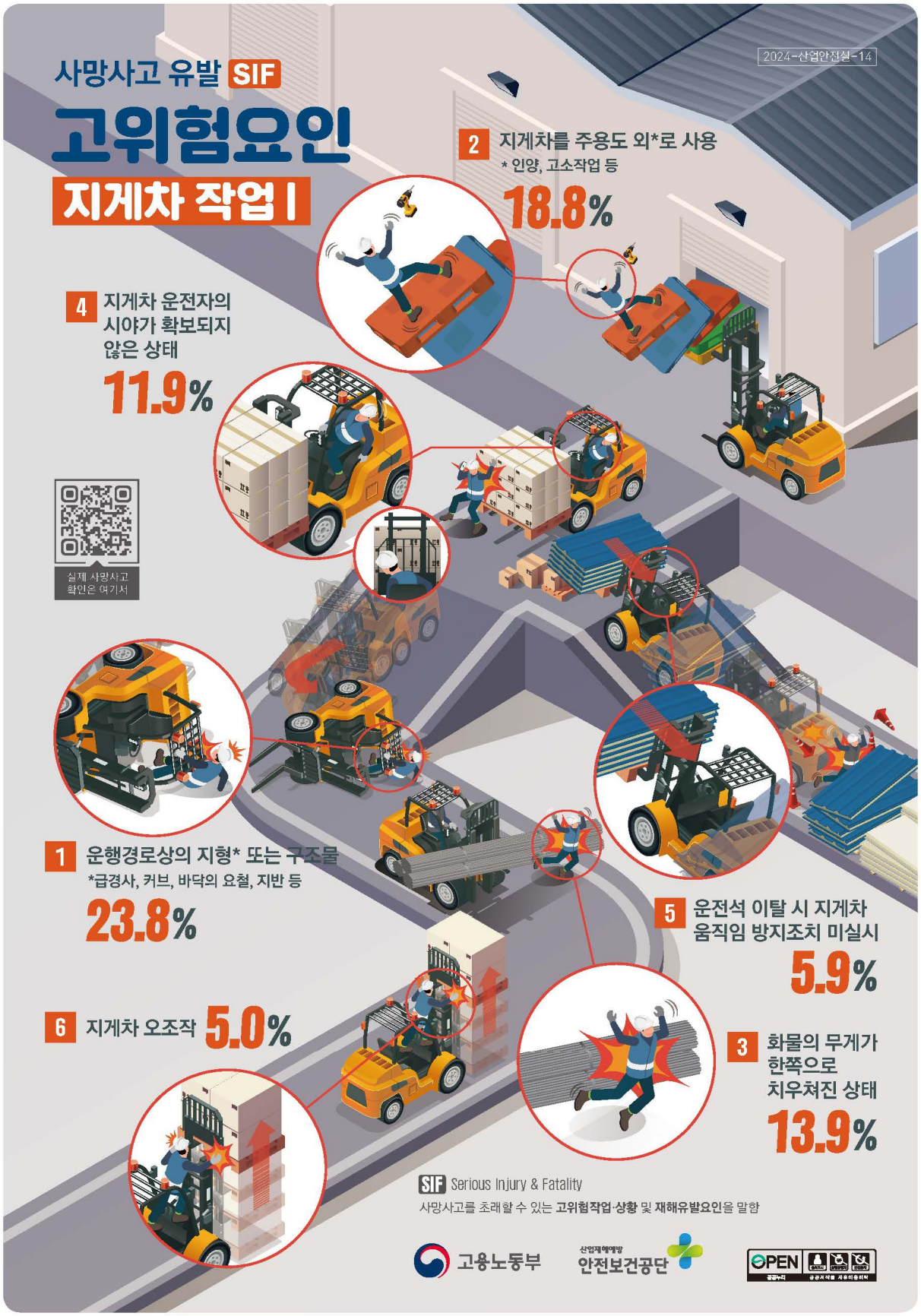
2024-산업안전실-14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 I
2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
* 인양, 고소작업 등
18.8%
4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11.9%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1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23.8%
5 운전석 이탈 시 지게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5.9%
6 지게차 오조작 5.0%
3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13.9%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 I

1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작업장 내 도로를 평탄화하고 제한속도를 준수
- 지게차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2

무엇이 위험한가요?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 (인양, 고소작업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지게차를 고소작업, 인양 용도 등으로 사용 금지
- 부득이하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작업대를 이용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

3

무엇이 위험한가요?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 팔렛트 등을 사용해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 운반 중 하중이 한쪽으로 몰려 단위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 상태를 고려해 지게차 운행

4

무엇이 위험한가요?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
-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5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전석 이탈 시 지게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하차
-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6

무엇이 위험한가요? 지게차 오조작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운반 화물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상태 확인
  ※ 운전석과 백레스트를 통과해 화물 조정 절대 금지
-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ART
04

참고자료

Ⅰ.「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예시 123
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신청방법 163
Ⅲ. K2B 전산시스템 매뉴얼 166

I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예시

Ⅰ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예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예시(안)

2025. 0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본 매뉴얼 예시는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여 귀 사업장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 및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문서번호	00-00-00		
구 분	■ 관 리 본 □ 비관리본		
제정일자	2000. 00. 00.		
개정번호	0		
개정일자	2000. 00. 00.		
결 재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성 명			
서 명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목차 및 개정이력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목차〉

목차번호	항 목	제·개정 현황			
		0	1	2	3
1	**경영자 리더십**	25/00/00			
1.1	리더십과 의지표명				
1.2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편성**	25/00/00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25/00/00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25/00/00			
5	**안전보건교육 계획**	25/00/00			
6	**비상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25/00/00			
6.1	비상시 대비 및 대응				
6.2	재발방지대책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25/00/00			
8	**평가 및 개선**	25/00/00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 명			
일 자	/	/	/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목차 및 개정이력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개정이력〉

개정번호	목차번호	개정내용	개정일자
0	-	최초작성	2025.OO.OO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1. 경영자 리더십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리더십과 의지표명

1.1 목적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통해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내·외부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전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3 리더십과 의지표명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리더십과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조직의 경영전략·목표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이를 정착 및 촉진시켜야 한다.

⑨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 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1. 경영자 리더십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4 세부이행사항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세부이행사항 작성

예시)
매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및 공표
월 1회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경영회의
월 1회 이상 소속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분기 1회 안전보건 메시지 전달
기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2.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2.1 목적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적용 범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본사 각 부서 및 소속 현장에 적용한다.

2.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승인, 유지, 검토*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고지* *- 본사 각 부서 추진계획 검토* *- 목표 및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및 실적관리* *- 목표 및 추진계획 분석 및 결과 보고*
유관부서	*- 본사 각 부서별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현장소장	*- 전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구성원(직원, 협력업체 관리자, 근로자 등)에게 전파 및 교육*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1. 경영자 리더십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2.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안전보건부서장은 최근 수년간 당사의 재해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초안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한다.

(2) 본사 각 부서는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에 따른 각 부서의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여 안전보건부서장에게 검토를 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대표이사는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00월말일까지 승인, 확정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은 확정된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매년 00월 00일까지 본사와 모든 현장에 공표 및 전파(사내 전산망 등)한다.

(4) 현장소장은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5)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및 성과측정을 주기적(분기별)으로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참고자료

[붙임1]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예시)

붙임1 안전보건 방침 등(예시)

안전보건방침

00건설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가.
나.
다.

20*00* 년 *00* 월 *00* 일

㈜ o o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안전보건목표

○ 전년대비 사고성 재해자수 10% 감소

○ 떨어짐 재해 연간 10건 이하 달성

추진계획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편성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본사*(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 및 승인* *-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경영자 검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승인 등*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내·외부 현안사항 조사 결과 체계 반영 검토* *- 유관부서와의 안전업무 협의회 구성 및 회의주관* *- 신규현장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점검* *- 현장 안전활동 평가 및 성과측정* *- 협력업체 안전활동 평가자료 취합 및 작성* *- 안전보건 관련 예산 계획 수립 등*
유관부서	*- 본사 각 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이행* *- 성과측정에 다른 미달성 계획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계약과 관련한 협력업체 안전수준 평가 기준 마련* *- 안전활동 평가 결과 인사고과 및 승진 등 반영 기준 마련* *- 전사 직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등*

3.2 현장*(현장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승인, 유지, 검토*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전사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고지* *- 본사 각 부서 추진계획 검토* *- 목표 및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및 실적관리* *- 목표 및 추진계획 분석 및 결과 보고*
유관부서	*- 본사 각 부서별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현장소장	*- 전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구성원(직원, 협력업체 관리자, 근로자 등)에게 전파 및 교육*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편성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활동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2)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매년 00월 00일까지 수립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4)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 후 공유한다.

(5) 유관부서는 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6) 안전보건부서장은 본사, 각 유관부서 및 현장조직의 안전활동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참고자료

[붙임2] 현장조직 안전활동 평가(예시)

붙임2 현장조직 안전활동 평가(예시)

■ 평가 Process

구 분	내 용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자	○ 시공담당임원 및 안전보건담당 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인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 현장 관리감독자(건축/전기/설비반장 등) 개인 평가
평가방법	○ *반기 1회* 안전보건직무 개인별 업무평가(*0월, 00월*) ※ 現 인사평가에 별도 '안전보건' 평가 반영 ○ 본사 안전보건조직에서 전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종합 평가·관리

1)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No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1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협력사 안전수행 평가 적정여부 및 일반사고 관리			
3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점검팀 신호등 평가 등*)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적정집행에 관한 조정 및 집행의 감독			
5	현장 근로자 의견청취 및 비상사태 모의훈련 등 모니터링			
6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시공담당, 건축·전기·설비반장 등(관리감독자)

No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협조			
2	유해·위험요인 누락없이 파악, 안전대책수립 조치 시행에 참여 여부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일일안전점검 조치 및 기록관리 여부			
4	담당구역 건설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안전보건 점검·조치 여부			
5	담당구역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여부			
6	담당구역개인보호구 점검, 착용·사용에 대한 교육 및 미 착용시 지도 여부			
7	담당구역 발생한 사고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의견청취)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승인*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 여부 점검결과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구축* *- 현장의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 *-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 이행*
근로자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 개진*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 정보공개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 근로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2) 현장소장은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 정보공유 및 의견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참고자료

[붙임3] 근로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예시)

[붙임4] 안전보건 제안서(예시)

붙임3 근로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예시)

근로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② 작업 공정 또는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④ 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결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림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및 제안	→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 및 확인	→	처리결과 알림
근로자		안전담당		공사담당		공사담당, 안전담당		안전담당

※ 안전보건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 활동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붙임4 안전보건 제안서(예시)

안전보건 제안서

결재				

제안자		**접수번호**	
소 속		**제안일자**	
제안사유			
제안내용	**개선 전**	**개선 후(조치 결과)**	
검토 결과	☐ 즉시 개선 필요 ☐ 계획적인 개선 필요 ☐ 관리적인 개선 필요 ☐ 현 상황에서 개선 불필요	**검토자**	(인)
검토 일자		**조치 일자**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위험성평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당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승인* *- 위험성평가 이행에 관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제공*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위험성평가 절차 구축* *-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당사 공사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현장과 공유*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현장 소속 구성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교육* *-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 점검*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
관리감독자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표 검토 및 피드백* *-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 *- TBM 참석 및 주요 위험요인 근로자 교육,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협력업체	*- 위험성평가표 작성 및 제출(작업반장이 참여하는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표 작성)* *- 원청사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 *- TBM 참석 및 주요 위험요인 근로자 교육,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원청사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 회신*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회의 준비* *- 위험성평가 회의록 및 평가표 등 문서기록 관리* *- 위험성 평가 결과 본사 보고*
근로자 (작업반장)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표(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작성 및 회의 참석* *-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TBM 시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준과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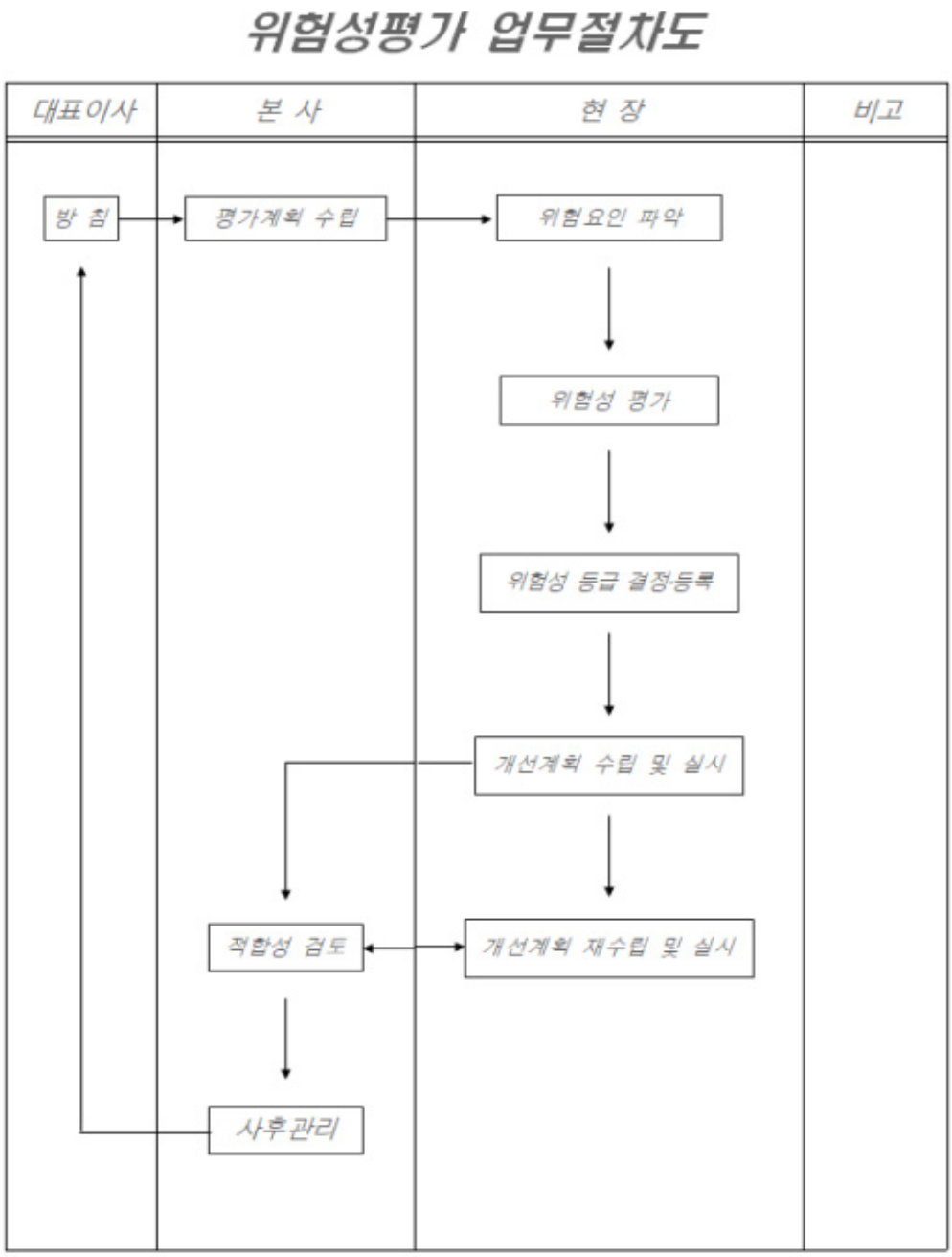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준과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4.1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본사에서는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단위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장과 공유한다.

4.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최초 평가: 협력업체 투입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협력업체와 함께 실시

2) 수시 평가: 매주 1회(또는 매월 1회)미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정에 대하여 협력업체 와 함께 실시

4.3 위험성평가 회의

1) 매주 O요일에 위험성평가회의를 실시하며, 참석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현장소장(회의 주관)

- 공사팀장(회의 진행) 및 관리감독자 전원

- 협력업체 소장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2) 협력업체소장은 소속 작업반장들과 함께 주간 공정표 및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회의 전에 제출한다.

3) 위험성평가 회의 시 지난 주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이행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4) 협력업체별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된 사항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논의한다.

5) 협력업체 소장은 위험성평가 회의 전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성평가 회의 시 이를 건의한다.

6) 위험성평가 회의 종료 후 위험성평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표를 기록·관리한다

4.4 위험성평가결과 교육 및 T.B.M

1) 협력업체소장은 위험성평가 주요 내용을 정기교육 시 근로자들에게 전파한다.

2) 작업반장은 TBM을 통해 매일 주요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이행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참고자료

[붙임5]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시)

[붙임6] TBM 운영 절차 및 시나리오(예시)

[붙임7]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예시)

붙임5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시)

※ 동 실시규정(예시)은 사업장(현장)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에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체명 (현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최초-상시)	작성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정일자)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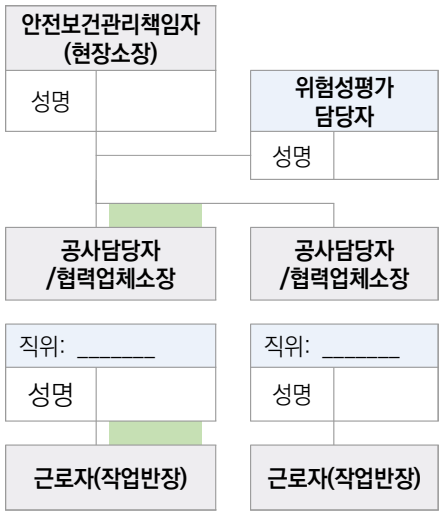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1. 사전준비	① 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 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① 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 아차사고 제보사례, ④ 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3. 위험성 결정	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②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 '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관리

위험성 수준	허용 가능 여부	관리 기준
상	허용 불가능	*감소대책 수립+ 관리감독자확인+안전관리자 확인*
중		*감소대책 수립+관리감독자 확인*
하	허용 가능	*현상태 유지*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 등급: 감소대책+원·하청관리감독자 확인+안전관리자 확인 ①-2. '중' 등급: 감소대책+원·하청관리감독자 확인 ①-3. '하' 등급: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5. 평가 결과 공유·교육	① **[TBM]**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 **[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 **[교육]**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6.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 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 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table>
<tr><td>평가별
시기</td><td colspan="3">❖ (최초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td></tr>
<tr><td rowspan="4">상시
평가
시기별
활동</td><td>실시주기</td><td>참여자</td><td>세부 내용</td></tr>
<tr><td>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td><td>·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
· 현장 근로자</td><td>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td></tr>
<tr><td>주(週)
매주
□요일</td><td>·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td><td>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td></tr>
<tr><td>일(日)
매일
작업 전</td><td>·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 소장
· 현장 근로자</td><td>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td></tr>
<tr><td>기록
보존</td><td colspan="3">•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td></tr>
</table>

붙임6 TBM 운영 절차 및 시나리오(예시)

〈TBM 운영 절차(예시)〉

사전준비	실행과정(10min)			환류조치
작업 전일	작업 당일	작업 당일	작업 당일	작업 당일
~18:00	07:00~07:03 (3min)	07:03~07:08 (5min)	07:08~07:10 (2min)	17:00~18:00
위험성평가 결과 정리	- 건강상태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 추가 위험요인 의견 제시	- 전 근로자 숙지여부 확인 - 해당사항 구호복창	- 문제점 취합 - 결과 피드백 - 기록 보관
TBM 리더 숙지	근로자 상호 체크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참여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상호 체크	지속적인 관리

〈TBM 실행 시나리오(예시)〉

구분	T.B.M 리더 멘트
① **작업장소 이동 (체조 및 스트레칭)**	○ 안녕하십니까? ○월 ○일 ○요일 ○○건설 아침 TBM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크게 따라 해 주십시오. - 목돌리기(어깨→허리→무릎→손목 및 발목 순으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② **건강상태 확인**	○ 체조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분 있으신가요? 어제 늦게까지 술 드신 분은 없으시죠? ○ 열이 나거나 평소와 달리 몸 상태(컨디션)가 안 좋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③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다음은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맞추어 서 주세요! 앞에 계신 동료분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④ **작업내용, 위험요인, 작업절차 확인**	○ 다음은 오늘 작업하실 내용과 위험요인 및 작업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00반장님 오늘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반장 대답 후) ○○작업을 하시는군요. 오늘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반장 대답 후) 그렇다면 00반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고 작업하셔야 안전할까요? (반장 대답 후) 00반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중점관리사항 및 안전대책을 전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⑤ **숙지여부 확인**	○ 오늘 가장 중요한 위험포인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작업 중 ○○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안전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지적 확인은 "○○한다!"로 하겠습니다. ○ 지적확인 준비! 얏! "○○한다!" (선창 1회) "○○한다!"(후창×3회)
⑥ **비상시 대피요령**	○ 다음은 비상시 대피요령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비상대피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상 대피로는 00계단이고, 밖으로 대피 후에는 비상집결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작업 위치에 소화기는 00 기둥, 00 계단 옆에 비치하였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붙임7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예시)

1. 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에 첨부

업체명(원청, 협력)	작성일자	관리기간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⑦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건설산업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근로자 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현장명	2023.04.28	2023년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 서명	자필 서명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건설현장							

(5)월 예정공정 현황: 지하2층, 지상 15층 주상복합 신축현장, 작성일 현재 공정률 약 40%이며, 5월 한 달간 지상 8층~10층 구조물 공사, 지하1층 ~ 지상 3층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예정임

①공종분류	②단위작업	③위험요인	④위험성 결정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 →작업변경 →안전시설물 →개인보호구 순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계자 예재(신호수 등) → 위험제감 교육 등)	⑥개선조치 담당자 (조치예정일)	⑧이행확인 (조치한 경우 √)	
			위험도 등급					근로자대표	공사담당자
			상	중	하				
철근작업	철근운반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운전원은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신호를 인지 후 장비 조작	김안전 반장(05.03)	√	√
철근작업	철근가공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
창호작업	창호설치	바닥이 참허되어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박보건 반장(05.01)	√	√
도장작업	실내도장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윤문화 반장(05.16)	√	√
설비작업									

위험요인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주차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주간 회의	점검 일정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⑨ 일일TBM 활동과 연계 : 참여인원 (투입/참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차 (4.30.~5.6)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 2건 이행 지연(차주 확인)	예정일자	실시일자	1.현장소장	2.근로자대표	3.공사담당	4.안전(보건)담당자	5.협력업체	4월30일	5월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경품 안양 시 안전조치 사항 7건 일일점검 실시(4.1.~4.5) → 개선완료 확인(4.6)	5.1	5.1	6.협력업체	7.협력업체	8.작업사원	9.작업사원	10.작업사원	5 / 4	9 / 7	7 / 7	7 / 7	6 / 6	7 / 6	5 / 5
2주차 (5.7.~5.13.)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지연 사항 2건에 대한 이행 완료 확인(4.11.)	예정일자	실시일자	1.현장소장	2.근로자대표	3.공사담당	4.안전(보건)담당자	5.협력업체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5.8	5.8	6.협력업체	7.협력업체	8.작업사원	9.작업사원	10.작업사원	5 / 4	8 / 7	7 / 6	10 / 8	10 / 9	/	/
3주차 (5.14.~5.20.)	작성란 부족시 별지 사용	예정일자	실시일자	1.현장소장	2.근로자대표	3.공사담당	4.안전(보건)담당자	5.협력업체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5.15	5.15	6.협력업체	7.협력업체	8.작업사원	9.작업사원	10.작업사원	/	/	/	/	/	/	/
4주차 (5.21.~5.27.)		예정일자	실시일자	1.현장소장	2.근로자대표	3.공사담당	4.안전(보건)담당자	5.협력업체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5.22	5.22	6.협력업체	7.협력업체	8.작업사원	9.작업사원	10.작업사원	/	/	/	/	/	/	/
5주차 (5.28.~6.3.)		예정일자	실시일자	1.현장소장	2.근로자대표	3.공사담당	4.안전(보건)담당자	5.협력업체	28일	29일	30일	31일	6월1일	2일	3일
		5.29	5.29	6.협력업체	7.협력업체	8.작업사원	9.작업사원	10.작업사원	/	/	/	/	/	/	/

≪ TBM순서 ≫

01 집합 인사 — 직원, TBM리더, 팀원

02 보호구 확인 — 리더→팀원, 팀원간

03 당일작업 및 위험사항 전달 — 전원참여, 위험예지

04 기타사항 전파 — 원청사 직원, 리더

05 지적확인 — 모든 팀원 3회 복창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5. 안전보건교육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당사 소속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인사부	*- 전사 임직원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최초 현장 개설 시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 현장 안전보건교육 이행에 대한 점검*
현장소장	*- 현장 안전보건교육 총괄*
안전관리자	*- 현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4.1 교육계획의 수립

(1) 인사부에서는 매년 OO월에 다음연도 임직원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부서장은 인사부와 협조하여 임직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을 상호 조율한다.

(3) 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OO월에 수립하고 현장소장 및 본부에 보고한다.

(4)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

참고자료

[붙임8] 현장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서(예시)

붙임8 현장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서(예시)

OOOO 현장				작성	검토	승인
연간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서				해당연도 *2000* 년		

교육 훈련명	대상	시간 (주기)	강사	실시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교육	전직원	*2hr/* (분기)	본사담당자 안전관리자													시스템 교육
채용시 교육	신규채용자	1hr (발생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2hr (월1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hr
정기교육 (근로자)	근로자	2hr (월1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매월교육 교재작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2hr (발생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근로자	2hr (발생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교재작성
위험성평가 전파교육(TBM)	전 근로자	10분 이내 (매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비상 모의훈련	전 근로자	1hr 내 (반기 1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시나리오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조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1.1 목적

현장(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유지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당사 소속 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의 직무, 책임, 권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상사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자연재난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 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

1.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및 조치업무 총괄 관리*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장에 배포* *-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 비상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 비상사태별 대응 및 조치업무 총괄*
현장소장	*- 현장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검토 및 승인* *- 현장 비상사태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관리* *-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본부 보고*
안전관리자	*- 현장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서 작성* *- 현장 비상사태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 비상사태 대비하여 구급 의료품 등 관련 장비를 비치 및 관리*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4.1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당사만의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현장에 배포한다.

(2) 현장에서는 본사에서 배포한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중대산업재해별로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 비상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비상조직도, 비상연락 체계도 및 비상사태별 개인 역할 및 임무*
- *비상사태별 대응 계획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및 비상 장비 수급/보관 계획*
- *비상사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계획 미 사전 점검 계획*

(4) 현장은 수립된 모의 훈련 계획에 따라 년 O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

(5)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비상사태 대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2 비상사태 발생 보고체계

(1) 본사에서는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현장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구호 조치 등 대응조치를 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3) 본사에서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참고자료

[붙임9] 본사 위험요인별 비상조치계획 및 시나리오(예시)

[붙임10] 현장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분장(예시)

[붙임11] 현장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예시)

붙임9 본사 위험요인별 비상조치계획 및 시나리오(예시)

위험요인별 비상조치계획 및 시나리오

□ 화재 사나리오(예시)

상황(경과)	시간	임무수행	상황별 조치 시나리오
재해발생	14:00	협력회사	■ 배관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인화설 자재에 화재 발생
상황전파	14:02 ~14:05	작업중지 (최조발견자)	■ 육성을 통한 “불이야” 상황전파(초기진압 가능시 소화기로 진압) ■ 유선 또는 무전기로 안전보건팀 상황실에 전파(위치, 규모) ■ 현장 내 전 작업중지 조치 실시(상황실 협조)
	14:05 ~	비상상황 보고 (상황실)	■ 상황반원(000과장) SMS을 이용한 전직원 및 근로자 상황 전파 ■ 상활실장(현장소장)에게 상황보고 ■ 대·내외 유관기관 및 119 신고
초기대응	14:07 ~	근로자 대피 (대피반)	■ 근로자 대피 실시(현장 외부), 접근 통제 조치
		피해·위험 확인 (구호반/제거반)	■ 사고발생 구간 투입(구급함 등 응급조치 용품 휴대) ■ 화재(급수/소화/유도 휴대) 발생구간 투입·진압 및 접근 통제
구호 및 피해방지	14:10 ~	사고者 구호조치 (구호반)	■ 사고者 재해 정도 확인 및 초기 응급조치(심페소생술) 실시 ■ 사고者 후송 실시(119 협조)
		추가피해 방지 (제거반/상황실)	■ 협력사별 집결 장소 내 인원 파악 실시 후 추가 피해 상황 보고 및 대책 수립, 초기진압 보고 등 ■ 유관기관 및 본사 상황보고
강평	14:20 ~	참석자 전원	■ 비상모의훈련 실시 결과 공유 ■ 훈련 목표달성 여부 확인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강평 실시

붙임10 현장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분장(예시)

비상대응 절차 및 업무분장

〈비상대응 절차〉

★최초 발견자
(상황실 전파/해당 작업중지)

비상발령 → 즉시

비상상황실(안전팀)
상황실장 : OOO 현장소장

대피반(토목팀)	**구호반**(공무팀)	**제거반**(공사팀)
(근로자 대피 및 119 위치 안내)	(사고자 구조, 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호각, 싸이렌(상황복창), 신호봉, 그 외 활동 도구류 등 활용 및 주변 근로자 유도 활동	공기호흡기, 구조삼각대, AED, 응급구급약, 응급 들 것, 호각, 소화도구, 그 외 활동 도구 활용	비상상황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활동

추가 피해방지 조치
(도급사 및 수급사/종사자)
추가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 실시

비상상황실(안전팀)
상황실장 : OOO 현장소장
→ 훈련 결과 분석/개선(안) 수렴

〈업무분장〉

상황실장
(지휘총괄)
현장소장 OOO

상황실	대 피 반	구 호 반	제 거 반
피해상황파악보고 관계기관지원협조 문서수발, 비상연락 소요예산관리	인명대피유도 위험지역통제 위험상황보고	응급조치 자재 확보 구호활동 및 방역 재해자 응급조치·후송	현장 지휘·감독 위험요인 대책수립 위험요인 제거·복구
안전팀장 OOO	토목팀장 OOO	공무팀장 OOO	공사팀장 OOO
요 원	요 원	요 원	요 원
안전담당 OOO	토목담당 OOO	공무담당 OOO	공사담당 OOO
안전담당 OOO	토목담당 OOO	공무담당 OOO	공사담당 OOO

붙임11 현장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예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재		
	/	/

훈 련 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주관부서	
참석인원		사용기자재	
훈련내용			
훈련결과 및 성과강평			
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차기계획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2. 재발방지대책

2.1 목적

현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해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유사한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적용 범위

당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재발방지대책 승인*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사고조사 보고서 검토*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재발방지대책 현장에 배포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소장	*-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 본사 보고* *- 본사에서 배포 된 재발방지대책의 현장 이행 총괄*
안전관리자	*-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본사에서 배포 된 재발방지대책 이행*

2.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2)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
(3)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소속 현장에 배포한다.
(4) 현장은 본사에서 배포된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한다.
(5) 본사에서는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참고자료

[붙임12] 사고조사보고서(예시)

[붙임1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관리대장(예시)

붙임12 사고조사보고서(예시)

<table>
<tr><th colspan="6">사고조사 보고서</th></tr>
<tr><td rowspan="2">사고
조사반</td><td>소속</td><td>성명</td><td>소속</td><td colspan="2">성명</td></tr>
<tr><td></td><td>(인)
(인)
(인)</td><td></td><td colspan="2">(인)
(인)
(인)</td></tr>
<tr><td>사 고 명</td><td colspan="2"></td><td>사고일시</td><td colspan="2"></td></tr>
<tr><td>인적피해</td><td colspan="5">소속: 성명: 직급:</td></tr>
<tr><td>물적피해</td><td colspan="5"></td></tr>
<tr><td>사고장소</td><td></td><td>상해부위</td><td></td><td>사고형태</td><td></td></tr>
<tr><td>사고내용</td><td colspan="5"></td></tr>
<tr><td>피해내용</td><td colspan="5"></td></tr>
<tr><td>의사/ 외부
전문가 소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근본원인
파악</td><td colspan="2">• Man(인적요인)</td><td colspan="3">• Machine(기계/ 설비적 요인)</td></tr>
<tr><td colspan="2">• Media(방법/환경적 요인)</td><td colspan="3">• Management(관리적 요인)</td></tr>
<tr><td rowspan="2">재발
방지대책</td><td colspan="2">• Man(인적대책)</td><td colspan="3">• Machine(기계/ 설비적 대책)</td></tr>
<tr><td colspan="2">• Media(방법/환경적 대책)</td><td colspan="3">• Management(관리적 대책)</td></tr>
<tr><td>기타내용/
현장조사
사진</td><td colspan="5"></td></tr>
</table>

붙임1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관리대장(예시)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관리대장

결재	작성자 담당자	도급인 안전관리자	도급인 현장소장

구분	신고사항			조치사항	
	재해유형 (위험정도)	언제	작업내용	조치계획	조치자 (조치일)
	누가	어디서	사고내용	조치사항(조치일)	확인자 (확인일)
1	*아차사고 (중)*	*24.1.1. 10:00*	*해체한 거푸집을 지상 1층으로 운반*	*자재 정리정돈*	*관리감독자 ㅇㅇㅇ (24.1.3, 09:00)*
	홍길동	*5층 EV 피트부근*	*바닥에 있은 각재에 걸려 넘어짐 (부상 없음)*	*자재 정리정돈 완료*	*현장소장 ㅇ ㅇ ㅇ (24.1.3, 09:00)*
2	*산업재해*				
3					
4					

* 사고 발생일 이후 순회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 必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이하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에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지원과 수준평가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지원 및 수준평가 제도 최종 승인*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 협력업체 수준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지원* *- 현장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확인 및 대표 보고* *- 협력업체 수준평가의 이행여부 정기적으로 점검*
계약관련 부서	*-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계약 시 반영 기준 마련*
현장소장	*- 현장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총괄 및 본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현장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매년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배포한다.

(2)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3)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협력업체 수준평가 결과를 계약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대표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4) 계약관련부서는 협력업체 수준평가 결과를 차기년도부터 계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에게 보고한다.

참고자료

[붙임14]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표(예시)

붙임14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표(예시)

협력업체(본사) 안전보건평가표

협력업체명 :	평가기간 :
평가일시 :	평가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의견	평가 점수	비고
1	본사 안전조직의 구성여부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여부			
3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운영 현황			
	⋮			
	⋮			

협력업체(현장) 안전보건평가표

협력업체명 :	평가기간 :
평가일시 :	평가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의견	평가 점수	비고
1	위험성평가표 작성 수준			
2	위험성평가표 감소대책 이행 수준			
3	TBM 이행 수준			
	⋮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8. 평가 및 개선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1.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실행된 활동의 성과와 적정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측정,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지속적 개선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회사 조직 구성에 따라 책임과 권한 부여)*

구 분	내 용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성과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확인 및 개선조치 최종 승인*
안전보건 부서장(본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별 평가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 *- 안전보건방침, 목표, 추진계획 운영 현황* *-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운영 현황*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집행 현황* *- 관리책임자 등 평가 현황 확인*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조치 현황* *- 비상대응 절차 이행상태 운영 현황* *- 수급인 등 안전역량 확보 현황* *- 안전보건 법규이행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행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체계 유효성 평가는 자격을 가진 외부 심사자를 통해서도 가능)*
현장소장	*- 본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 보고*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결과 확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 *- 본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 개선*

회사 CI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문서번호	개정번호
		0000-00	0
	8. 평가 및 개선	제정일	개정일
		2025.00.00	2026.00.00

4. 업무절차*(회사에서 실제로 시행할 업무절차를 마련)*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절차 또는 이행사항을 도표 또는 글로 작성
예시)

(1)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매년 OO월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공표한다.

(2)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수립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현장별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3) 현장은 매월(또는 분기별, 반기별) 현장의 방침, 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 현황을 자체적으로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현장은 본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 보고한다.

(5)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다.

(6) 본사 안전보건부서장은 성과평가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유효성 평가는 외부 심사자를 통해서도 가능함)

(6)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참고자료

[붙임15] 본사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표(예시)

[붙임16]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 점검표(예시)

[붙임17] 개선조치 결과(요구) 보고서(예시)

붙임15 본사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표(예시)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구분		목표 여부	세부 추진계획 내용	일정 1	2	3	4	담당자	달성율 (%)	예산	비고
계획수립			• 안전보건추진계획	○						[인적예산] *인원:* *인건비:* [물적예산] *회의비:* *교육비:* *보호구:* ...	
절차 제·개정		○	• *대형(고)위험 작업 실명제*	○	○	○	○				*1회/격주*
		○	• *기본 준수 문화 기준마련*	○	○						
		○	• *원수급 현장 시스템 마련*			○					
교육	임원 및 팀장 안전교육		• 안전이슈 및 안전동향		○						*1회/연*
	현장소장 교육		• 역할 및 안전이슈	○	○	○	○				*6회/연 (집체)*
	전직원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					
	신규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 현장 위험성평가 활동 이해			○					*1회/연 (집체)*
	현장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회사정책, 이슈		○						*1회/연 (집체)*
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및 운영	○	•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등록 실적* • *현장 이행여부 확인*								*반기1회*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이행조치	○	• 계획 수립 및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	○				*반기1회*
	비상대응 절차 및 모의훈련		• 계획 수립 및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	○				*반기1회*
	안전보건법규이행		• 현장 이행여부 확인		○		○				*반기1회*
	일일 TBM	○	• 매주 모니터링 및 보고	○	○	○	○				*주간*
의사 소통	경영자 검토		• 안전보건 추진계획 • 주요 안전이슈 보고		○		○				*반기1회*
	안전보건자료 공유		• 시기별 안전이슈	○	○	○	○				*월간*
			• 당사/ 타사 사고사례	*발생 시*							
	안전회의		• 고위험/ 이슈 현장 파악 등	○	○	○	○				

붙임16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 점검표(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효성 점검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 (체계 보완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1 경영자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1.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2.1 조직 및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부여			
	2.2 안전보건 예산 편성			
3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 (의견청취)	3.1 근로자 의견 수렴 제도			
	3.2 안전보건 정보 공개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1 위험성평가 실시			
	4.2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5 안전보건교육 계획	5.1 교육계획 수립			
	5.2 교육실시			
6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6.1 비상 시 조치계획			
	6.2 재발방지대책 수립			
7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관리	7.1 협력업체 수준평가			
	7.2 협력업체 선정 시 반영			
8 평가 및 개선	8.1 성과평가			
	8.2 지속적 개선			

붙임17 개선조치 결과(요구) 보고서(예시)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 부서		**작성일자**	
구분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 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시정조치 일정			
시정조치 방안			
완료(예정) 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관리감독자 확인**	(인)

조치내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신청방법

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신청방법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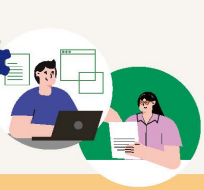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비용 무료)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종**: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제조업 5회, 기타업종 2회, 건설업 7회)

신청 및 접수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 온라인: https://kosha.or.kr/constreq

신청 바로가기

제조·기타업종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문의처
서울 광역본부	▸TEL 02-6711-2894, 2895 ▸FAX 02-6711-2959 ▸E-mail tony0516@kosha.or.kr
부산 광역본부	▸TEL 051-520-0607, 0609 ▸FAX 051-520-0659 ▸E-mail koshabusan@kosha.or.kr
광주 광역본부	▸TEL 062-949-8747, 8748 ▸FAX 062-944-8273 ▸E-mail gjcg@kosha.or.kr
대구 광역본부	▸TEL 053-609-0562, 0565 ▸FAX 053-421-8623 ▸E-mail cgd9@kosha.or.kr
인천 광역본부	▸TEL 032-510-0609, 0612 ▸FAX 032-581-2415 ▸E-mail cmjin216@kosha.or.kr, canada@kosha.or.kr
대전세종 광역본부	▸TEL 042-620-5616 ▸FAX 042-632-3619 ▸E-mail u_lim1114@kosha.or.kr
경기 지역본부	▸TEL 031-259-7128, 7127, 7122, 7123 ▸FAX 031-259-7133 ▸E-mail safetydepartment@kosha.or.kr

건설업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문의처
서울 광역본부	▸TEL 02-6711-2872, 2875 ▸FAX 02-6711-2889 ▸E-mail lmr@kosha.or.kr
부산 광역본부	▸TEL 051-520-0593, 0597 ▸FAX 051-520-0599 ▸E-mail clouds10@kosha.or.kr
광주 광역본부	▸TEL 062-949-8793, 8799 ▸FAX 062-949-8729 ▸E-mail woodong@kosha.or.kr
대구 광역본부	▸TEL 053-609-0592, 0597 ▸FAX 053-421-8626 ▸E-mail y97016@kosha.or.kr
인천 광역본부	▸TEL 032-510-0582, 0587 ▸FAX 032-574-6175 ▸E-mail picobo2@kosha.or.kr
대전세종 광역본부	▸TEL 042-620-5629, 5627 ▸FAX 042-636-5508 ▸E-mail mhwman@kosha.or.kr
경기 지역본부	▸TEL 031-259-7136, 7142 ▸FAX 031-259-7130 ▸E-mail spingus@kosha.or.kr

2025-산업안전실-37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신청 사업장 (필수 작성)	[본사]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컨설팅 대상 업종)** 종합건설업체(토건 시평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면허 보유 기업
  * '24.08.01. 공시 순위 기준
* **(컨설팅 지원 제외)** ①'25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②'22년~'24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③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민간기관 컨설팅 시 배정된 민간기관(제3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사업모니터링,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컨설팅 수행기관 연결	▶ 대상선정 결과통지
신청인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Ⅲ

K2B 전산시스템 매뉴얼

Ⅲ K2B 전산시스템 매뉴얼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시스템[K2B]

1) 시스템 이용 체계 : http://k2b.kosha.or.kr 사이트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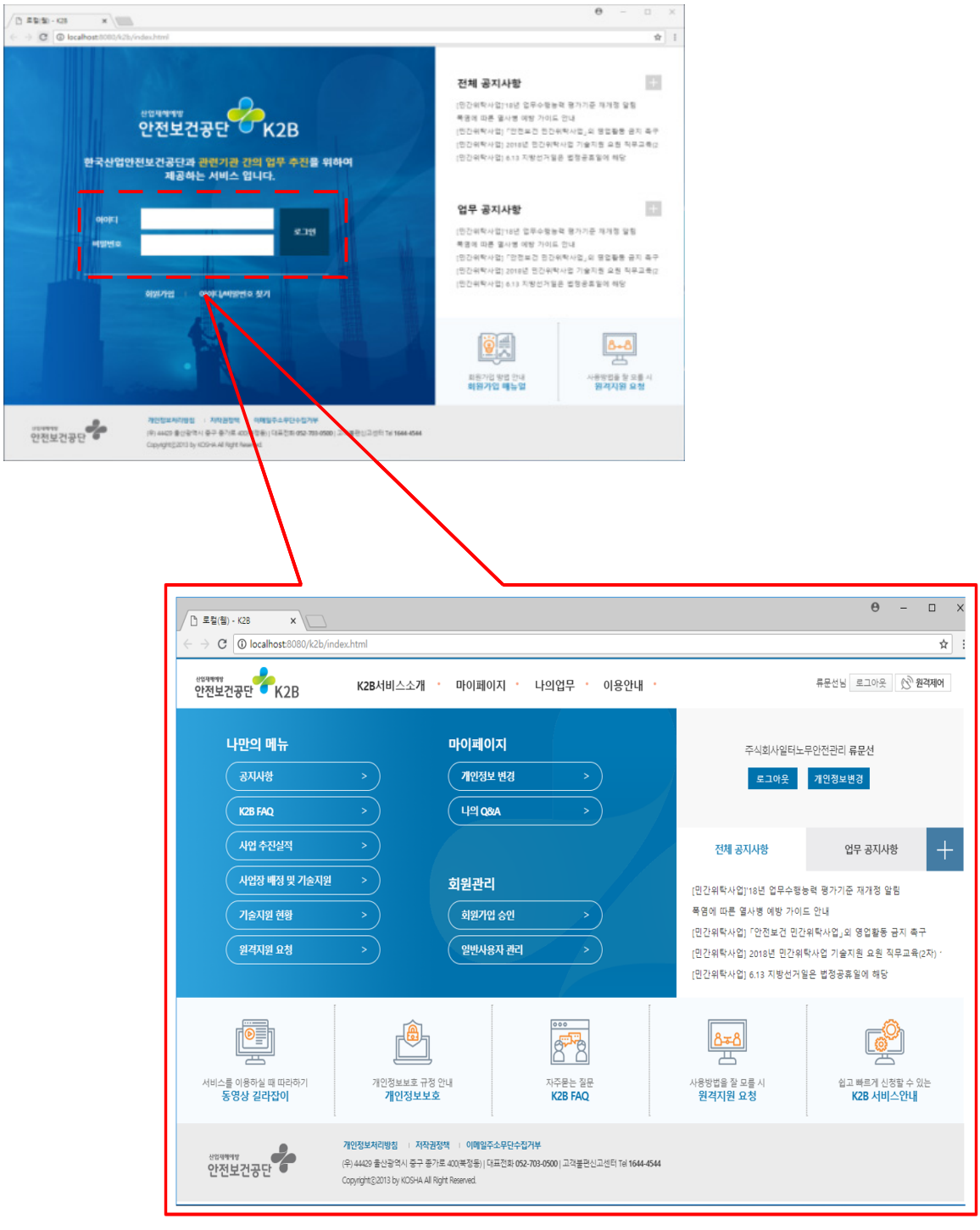

업무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록 안내(1)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K2B 서비스 업무관리자 가입 안내

K2B 서비스 소개

K2B 서비스는 수행기관의 관리자/담당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결과 입력 등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K2B 서비스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체계적 수행 및 공단과 정보교류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1 가입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① 공문(업무진행을 위한 업무관리자※ 등록요청 공문) ② 재직증명서(업무관리자) ③ 가입신청서 ④ (법인이 아니거나 법인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업무관리자 본인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가입절차

1. 필요서류를 관할 공단 광역(경기지역)본부에 제출
2. 공단에서 신청서 내용 확인 후 K2B 서비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기관 및 업무관리자 등록
3. 등록이 완료되면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이동전화 문자로 인증번호 발송
4. 업무관리자는 인증번호를 전송 받으면 https://k2b.kosha.or.kr에 접속하여 가입절차 진행
   ※ K2B로 회원가입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이 필요
5. 회원가입하기 → 업무관리자 회원가입→ 회원가입절차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 사용자 확인 실시(사용자 확인 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 → 회원정보입력
6. 공단 담당자가 회원가입 승인(1~2일 소요)
7. K2B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관리자 회원가입 완료

업무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록 안내(2)

○ 일반사용자 회원가입절차

업무관리자는 소속기관의 직원을 일반사용자로 등록하여 접근/작업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자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관리자가 소속기관의 일반사용자를 등록(이동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됨)

   나의 업무 → 회원관리 → 일반사용자 관리

2. 일반사용자가 K2B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반사용자 회원가입 진행(범용공인인증서 등록)

3. 업무관리자가 회원가입 승인

4. 일반사용자 회원가입 완료

※ 업무관리자(Administrator) : 수행기관의 업무총괄 담당자
일반사용자(User) : "업무관리자"와 동일한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업무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록 안내(3)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업무관리자 K2B 서비스 가입 신청서

☐ 신청업무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사업장 인증수단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예 ☐ , 아니오 ☐)

1. 수행기관 정보

기관명/부서명	
대표자명	
연 락 처	전화번호: (내선) FAX :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략 가능)

2. 업무관리자 정보

성 명	
이동전화 통신사	(예 : SK, KT, LG, 알뜰폰 표기)
이동전화 번호	
E-mail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o K2B 서비스 가입을 위한 자료 수집 : 개인 확인 · 등록 및 인증번호 전송
(개인정보 수집범위)
o 필수정보 : 성명, 핸드폰번호, 재직증명서
o 보유기간 : 3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 안함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K2B 서비스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 . . .

성 명: (서명)

2) 대쉬보드

가) Main Menu

- 사업장배정
  - 수행기관에 배정된 사업장들을 기술지도요원에게 배정하는 기능(관리자)
- 기술지원현황
  - 수행기관에 배정된 사업장들을 조회, 입력하는 기능(사용자)
- 추진실적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실적을 통계로 조회하는 기능

나) 공통 Layout개요(Home화면): 기능설명

① 전체메뉴 :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 메뉴 확인 가능
② 나만의 메뉴 & 마이 페이지 & 회원관리 : 해당 화면으로 바로 가기 기능
③ 전체 공지사항 & 업무 공지사항 : 공지사항 확인

다) 공통 Layout개요 (Main화면) : 기능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공통레이아웃은 위의 예와 같이 탑 메뉴, 세부 메뉴, 검색 조건, 조회 리스트, 저장 영역으로 되어 있음.

① 탑 메뉴 : 탑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메뉴가 선택한 메뉴의 하위에 나타나고 연결된 화면

② 세부 메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상세 메뉴

③ 검색 영역 : 사업장배정 조회를 위한 검색조건

④ 조회 영역 : 조회된 사업장 목록 확인

2. 화면설명서

1) 사업장 배정 및 기술지원

① '조회' 버튼을 클릭 할 시 입력한 조회 조건에 따라 사업장을 조회

② '제외안보기' 체크박스를 클릭 할 시 사업장 상태가 "제외"인 사업장을 조회

③ '사업장상세현황' 버튼을 클릭할 시 입력한 조회 조건에 따라 대상 사업장 상세정보를 선택한 경로에 엑셀 파일로 저장

④ '엑셀' 버튼을 클릭할 시 조회된 대상 사업장 정보를 선택한 경로에 엑셀 파일로 저장

⑤ '재해현황 ' 버튼을 클릭할 시 조회된 대상 사업장의 재해정보를 선택한 경로에 엑셀 파일

⑥ 입력한 조회 조건에 따라 사업장 정보 리스트가 조회,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할 시 사업장 상세정보 화면이 팝업으로 생성

⑦ '배정현황보기' 버튼을 클릭할 시 직원 배정 현황 팝업이 생성

⑧ '일괄 배정' 버튼을 클릭할 시 사업장들에 담당자를 일괄 배정하는 팝업이 생성

⑨ '담당자 조회' 버튼을 클릭할 시 배정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생성

⑩ '사업장배정' 버튼을 클릭할 시 선택된 사업장들에게 선택한 기술지도요원을 배정

2) 사업장 배정 및 기술지원 – 엑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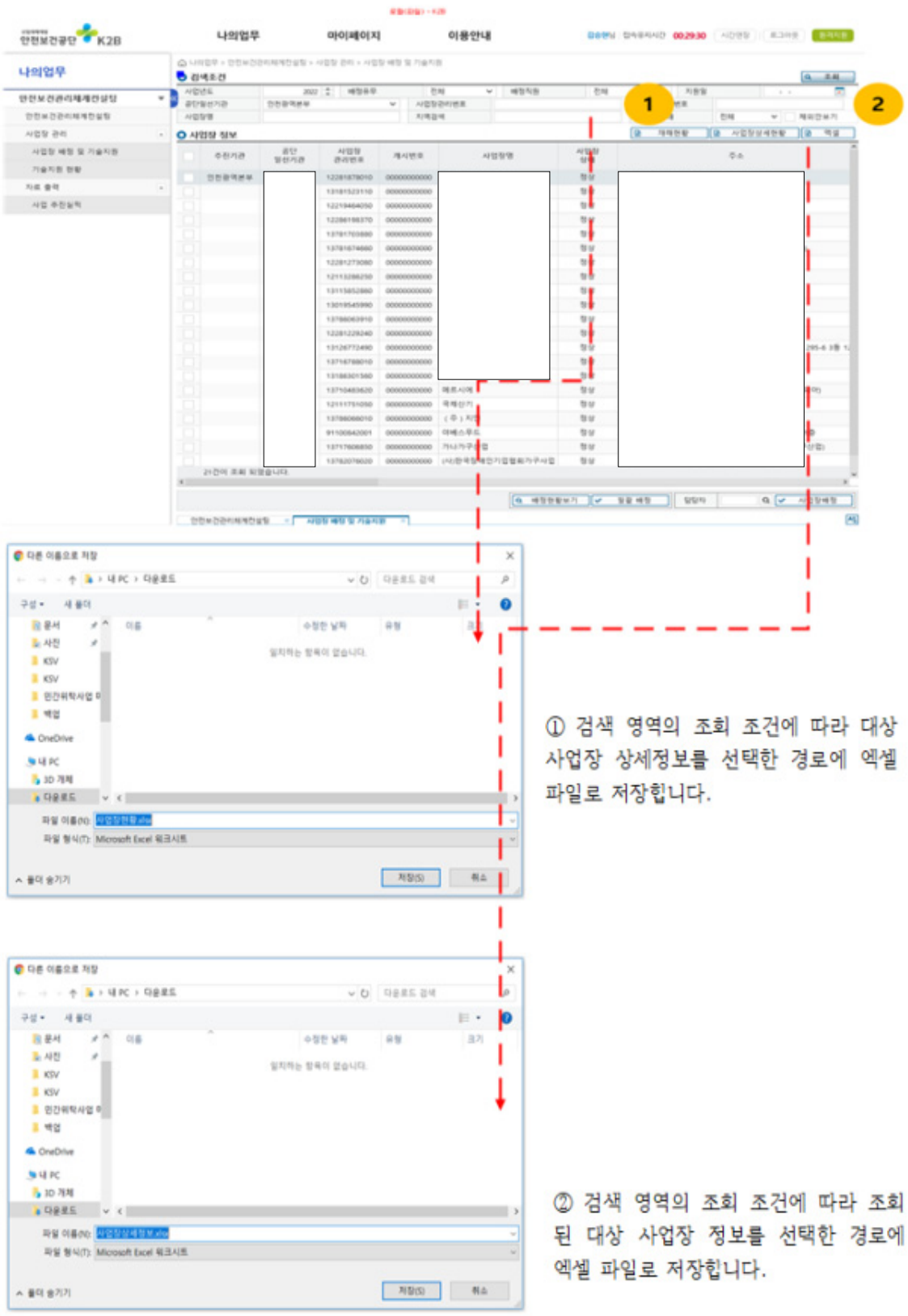

3) 사업장 배정 및 기술지원- 일괄 현황 확인 등

① 배정현황보기 팝업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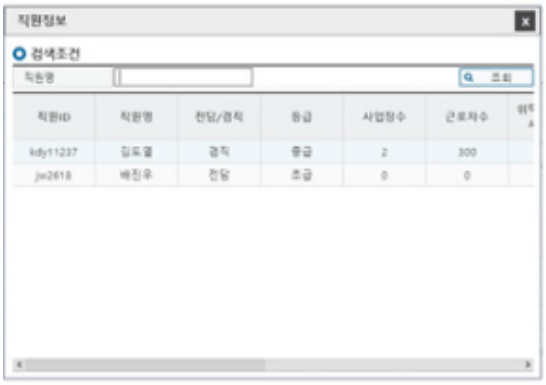

② 일괄 배정 팝업 창

③ 담당자 팝업 창

4) 사업장 배정 및 기술지원 – 사업장 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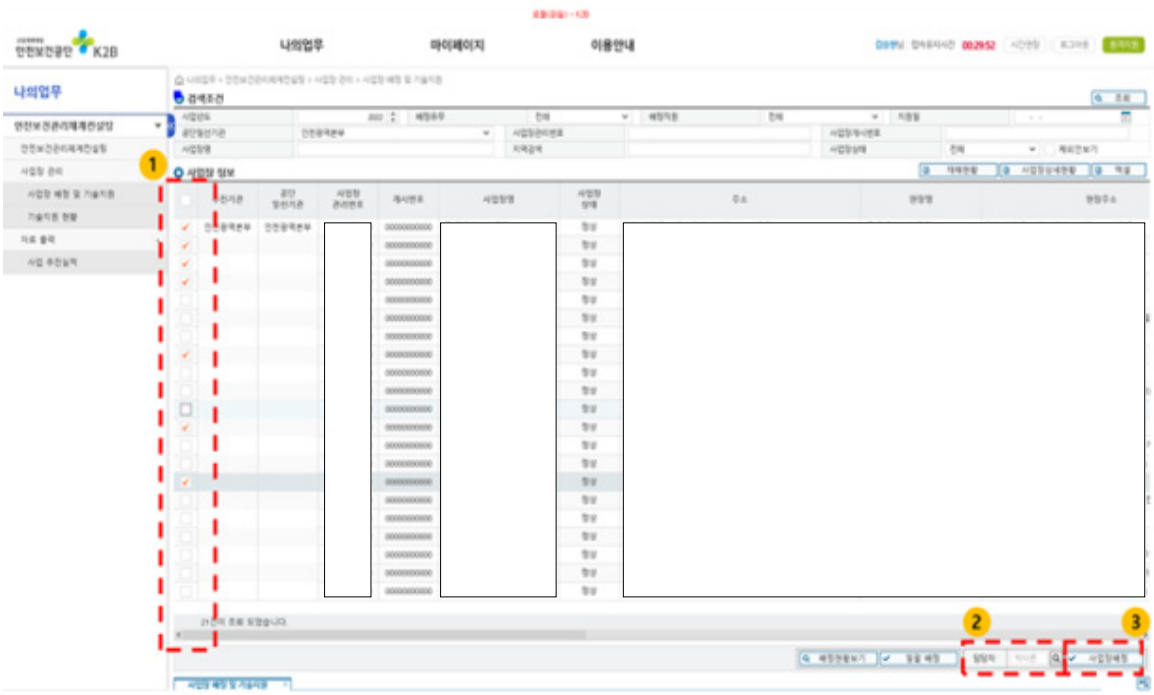

① 담당자를 배정할 사업장에 체크를 합니다.

② '담당자 버튼' 을 클릭하여 사업장에 배정할 담당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③ 담당자를 배정할 사업장과 사업장에 배정할 담당자를 선택하여 '사업장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담당자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 담당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배정할 수 엇습니다.
- 사업장의 상태가 '진행' 인 사업장은 담당자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장 배정 및 기술지원–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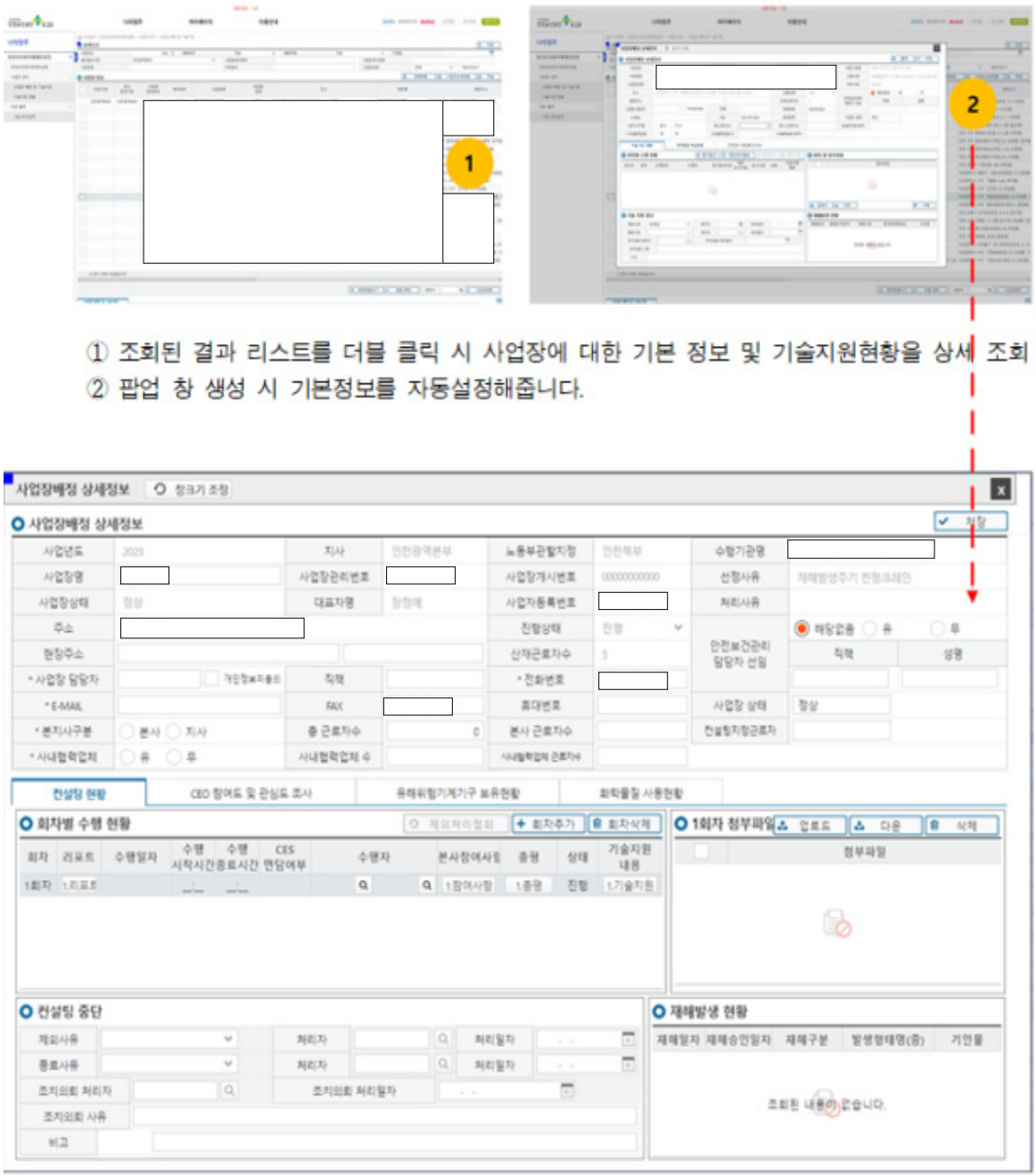

6)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 회차별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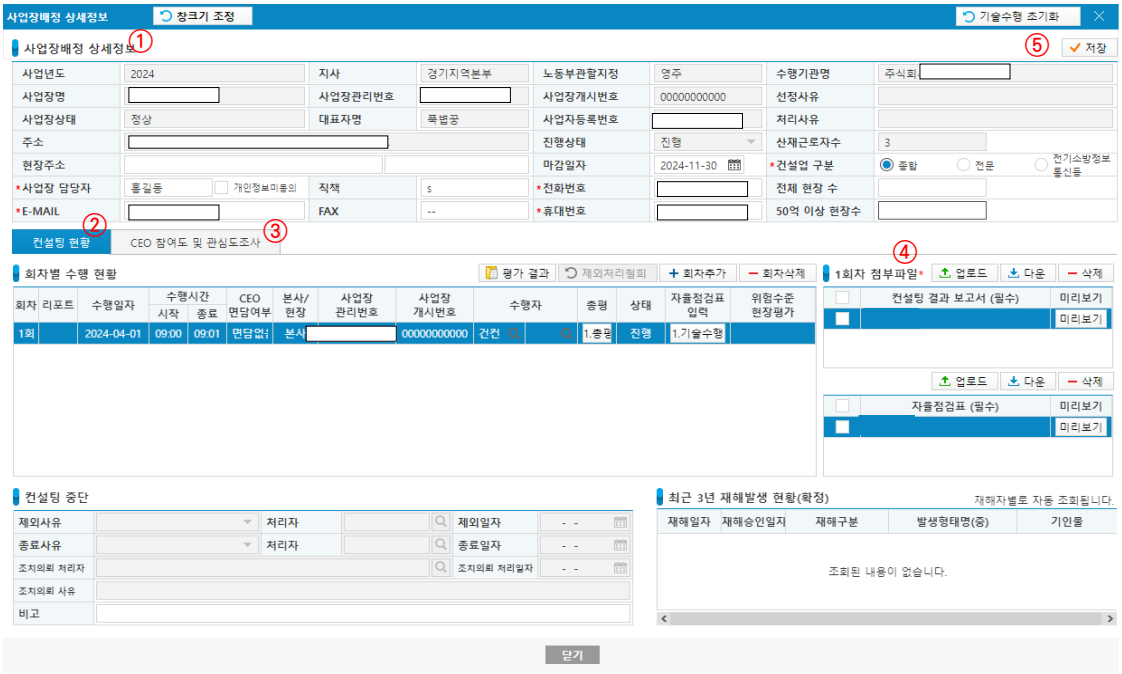

① 사업장배정 상세정보 입력

- 사업장 담당자(개인정보동의여부체크). E-MAIL, 본·지사, 건설업종 구분 등 정보 입력

② 회차별 수행 현황

- 수행일자, 수행시작·종료시간, CEO 면담여부, 수행자 등 수행사항 입력
- 자율점검표 입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건별 확인사항(8가지 항목) 등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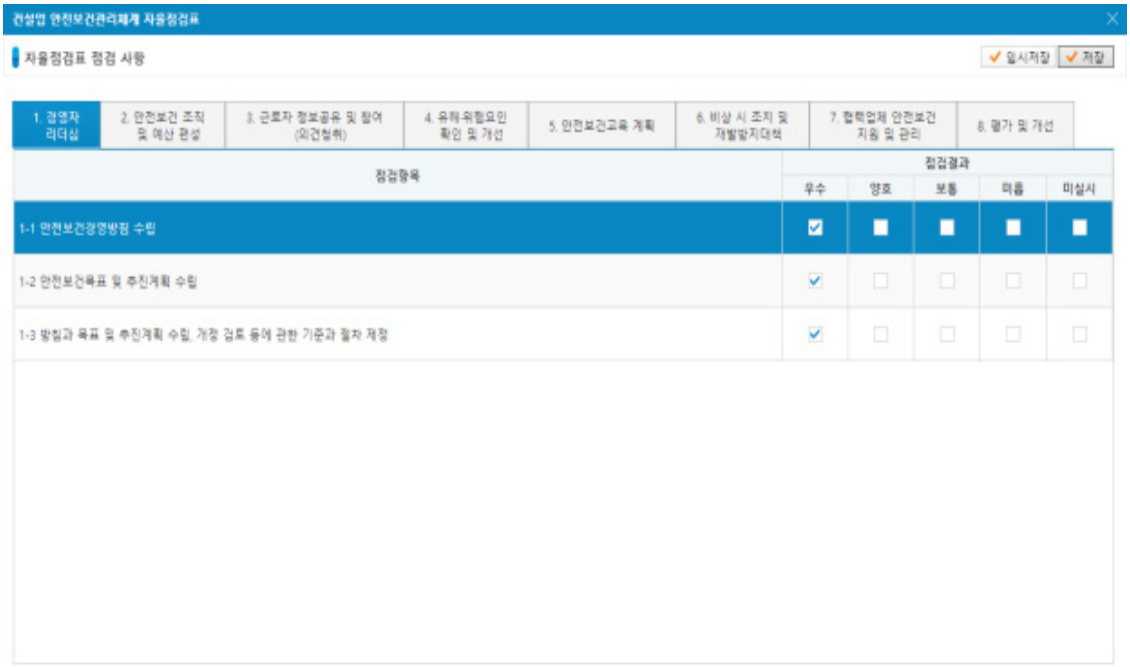

③ CEO 참여도 및 관심도조사 입력

④ 회차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자율점검표 및 집체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⑤ 저장

6)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 회차별 보고서 작성(상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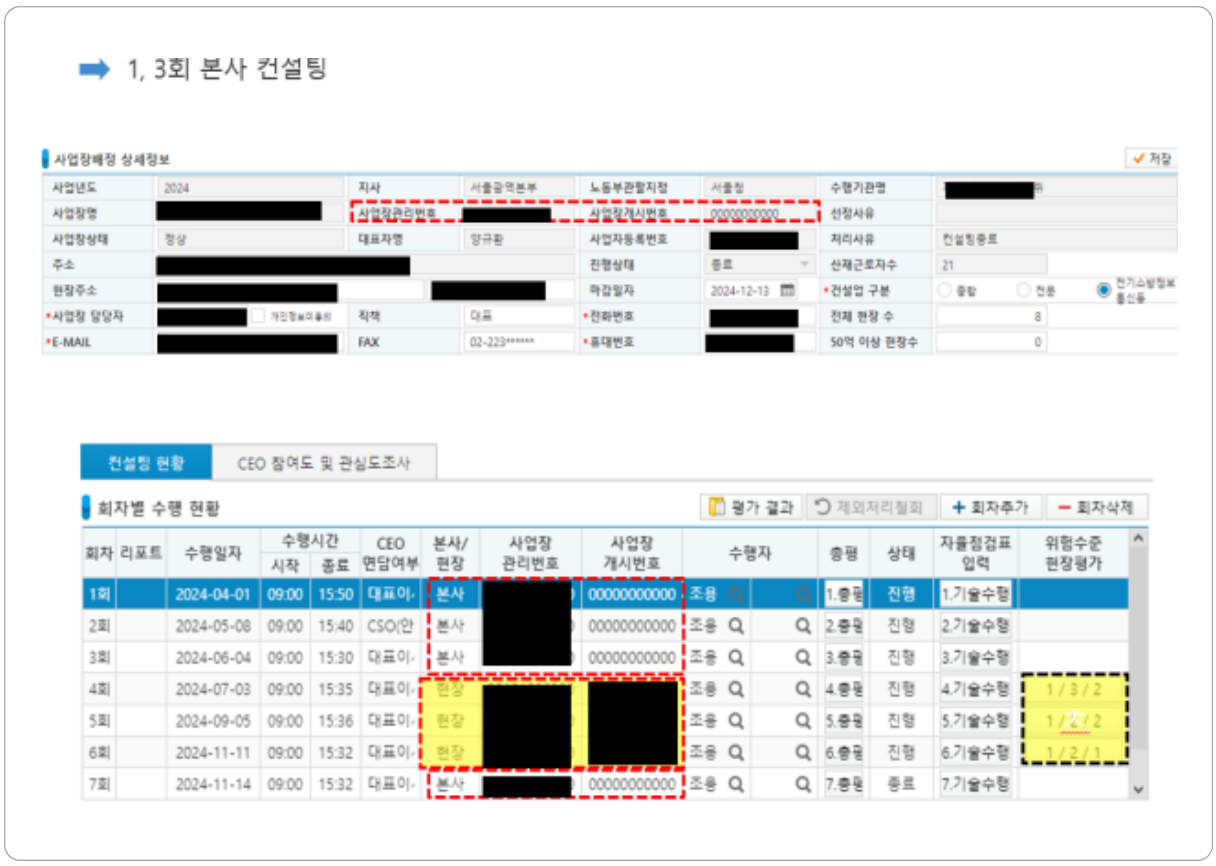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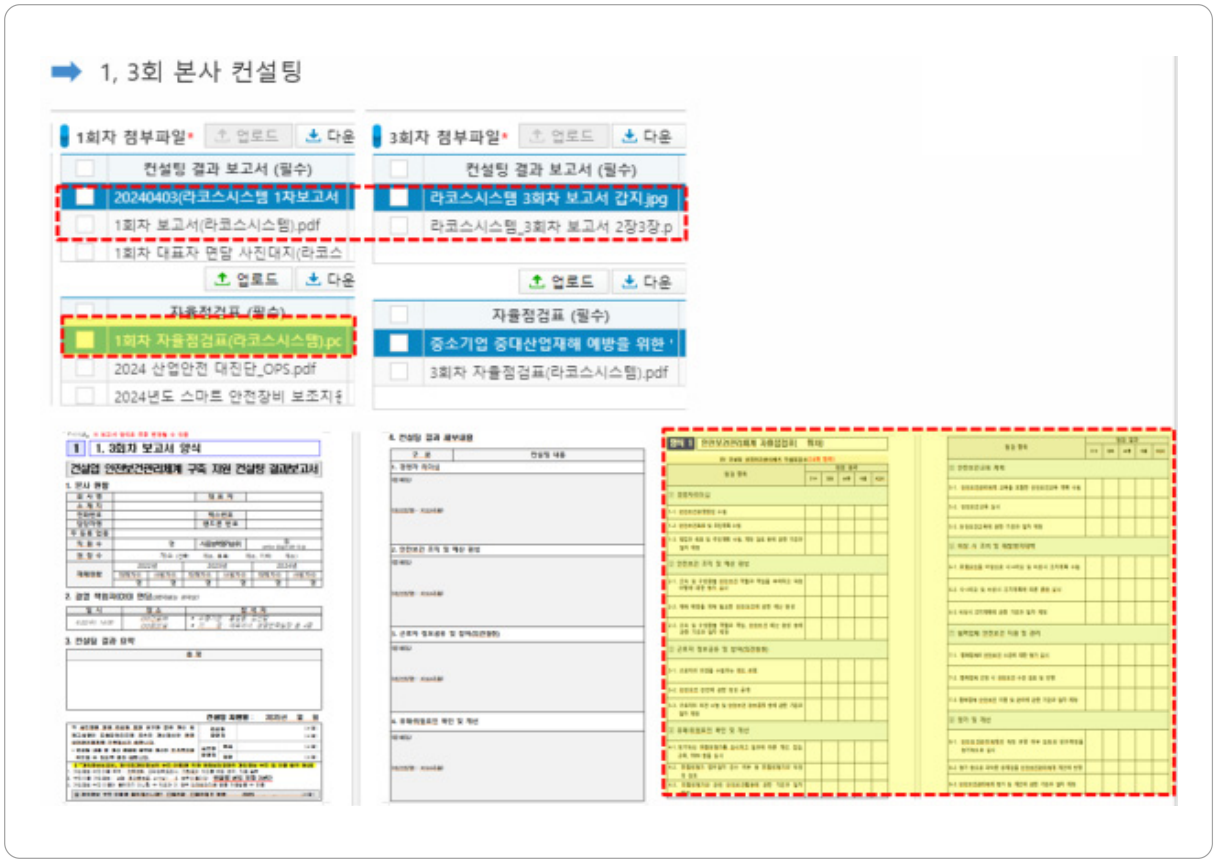

6)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 회차별 보고서 작성(상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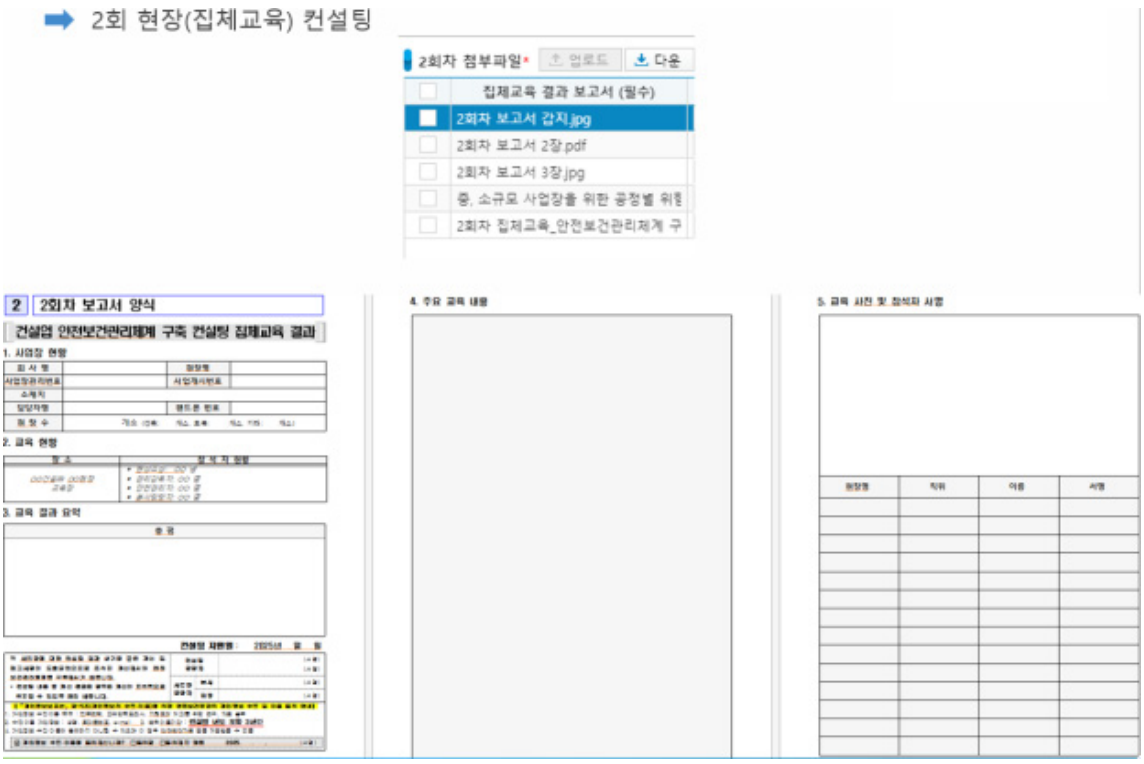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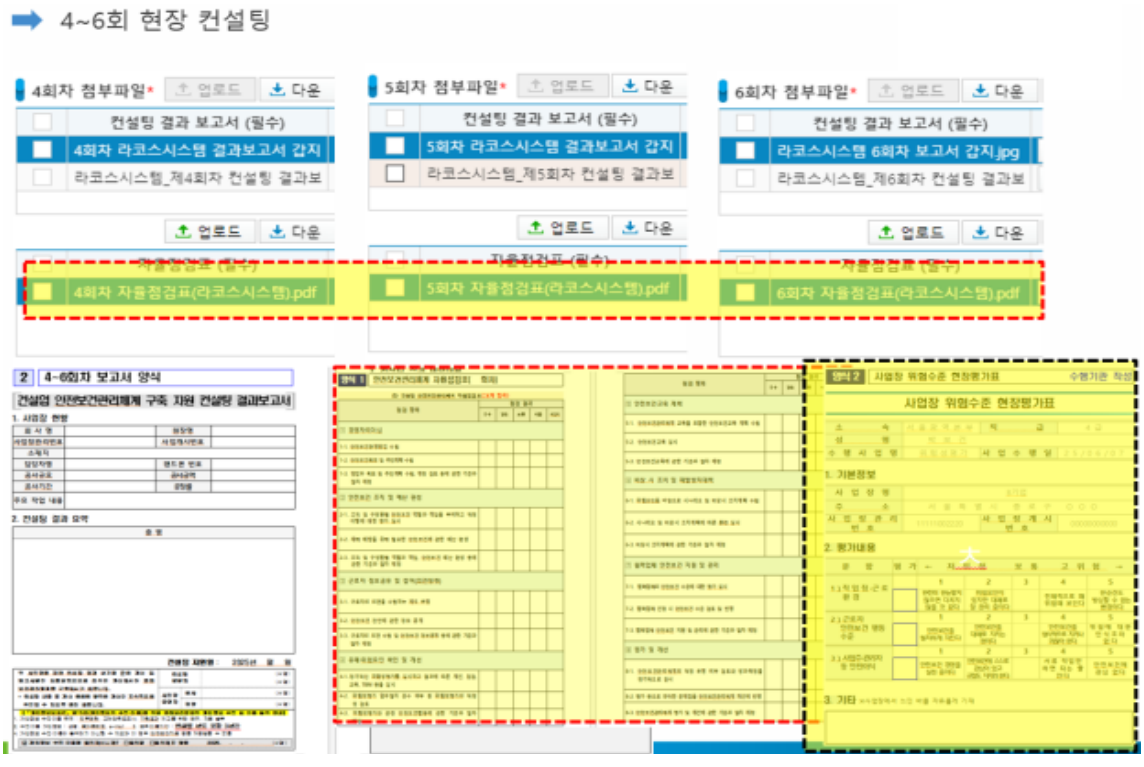

6)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 회차별 보고서 작성(상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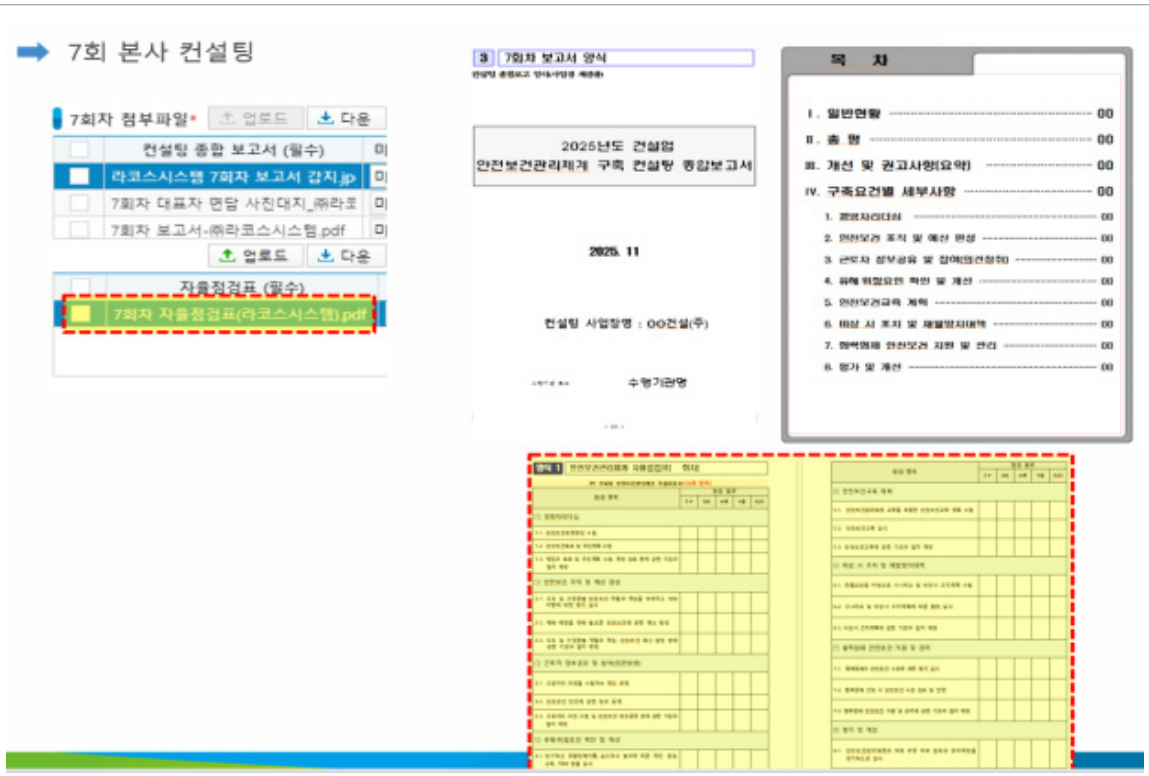

7)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 – 기술지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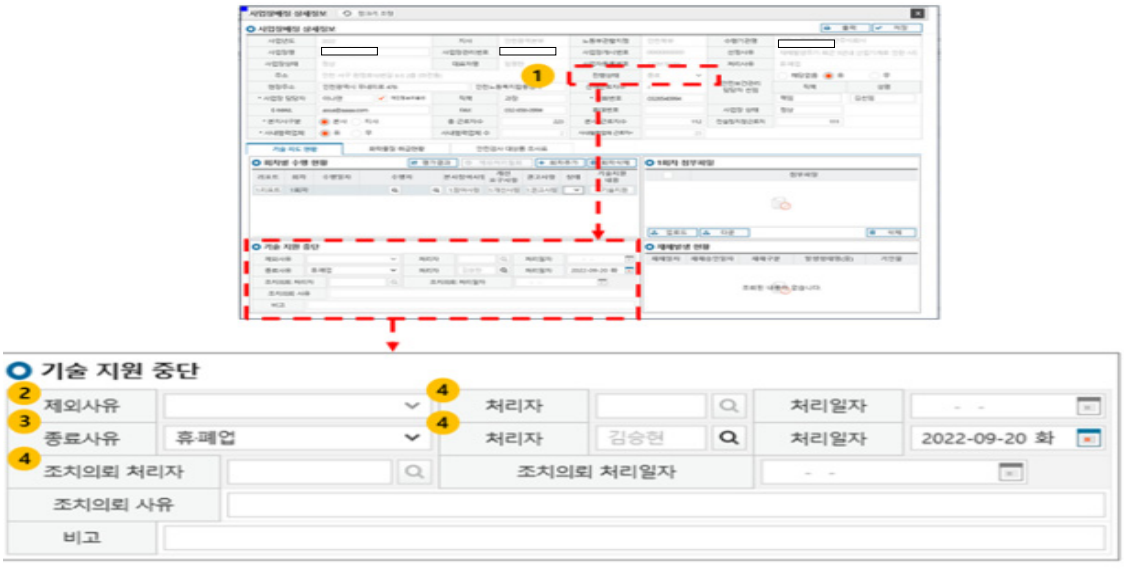

① 사업장 배정 상세정보의 진행 상태에 의해 기술 지원 중단 사유 입력 가능
- 진행상태가 '대상' 일 경우 제외 사유 입력 가능
- 진행상태가 '진행' 일 경우 모든 사유 입력 불가능
- 진행상태가 '제외' 일 경우 제외 사유 입력 가능
- 진행상태가 '종료' 일 경우 종료 사유 입력 가능

② 제외사유 콤보창에서 '기타' 선택 시 기타사유 입력박스창이 생성
③ 종료사유 콤보창에서 '조치의뢰(기타)' 선택 시 종료사유 입력박스 생성
④ '처리자' 버튼을 클릭 할 시 배정할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생성

8) 조치의뢰 관리(관리자만 권한이 있음): 조치의뢰 사업장을 등록하고 승인여부를 조회 화면

-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 > 사업장관리 > 조치의뢰 관리
- 조치의뢰 사업장을 등록, 수정, 삭제 가능
  ① '조회' 버튼을 클릭 할 시 입력한 조회 조건에 따라 사업장을 조회
  ② '엑셀 다운로드' 클릭 ->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된 내용이 엑셀 저장
  ③ '추가' 버튼을 클릭 할 시 등록할 사업장을 조회하는 팝업이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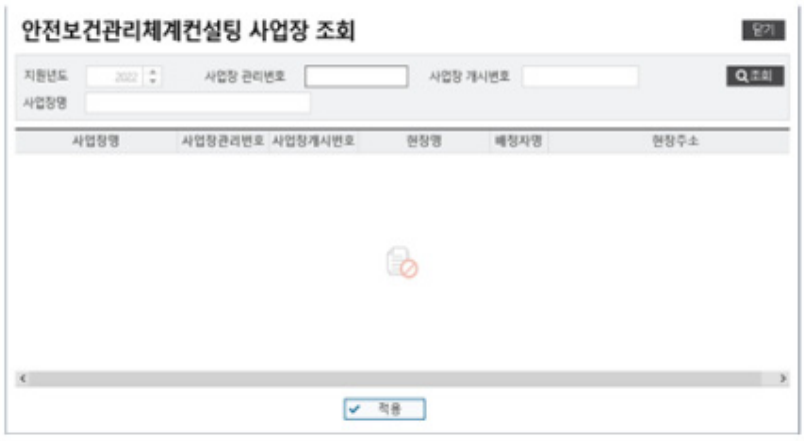

※ 사업장 조회후 더블클릭 시 본 화면에 사업장이 적용
④ '저장' 버튼을 누르면 추가, 변경, 재요청한 조치의뢰 내용이 저장
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조치의뢰가 삭제
※ 승인요청 상태만 삭제가능
⑥ '재요청' 버튼을 누르면 [반려된] 조치의뢰 건을 재요청
※ 저장버튼을 눌러야 저장됩니다.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2025-건설안전실-259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

발행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 현 중**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주 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 무단 복사 및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위탁 안내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